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

Asia shares legislative experience



www.moleg.go.kr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17. 11. 1.(수)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ROGRAM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15	5'	■ 개회사
		5'	■ 환영사
		5'	■ 축사
기조연설	14:15-14:45	30'	■ 기조연설
휴식	14:45-15:00	15'	커피 브레이크
제1세션	15:00-16:00	60'	■ 제1세션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 개관 * 발제 및 토론
휴식	16:00-16:20	20'	커피 브레이크
제2세션	16:20-17:50	90'	■ 제2세션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발제 및 토론
만찬	18:00~		

Events	Time		Contents
Opening Ceremony	14:00-14:15	5'	■ Opening Remarks
		5'	■ Welcoming Address
		5'	■ Congratulatory Address
Keynote Speech	14:15-14:45	30'	■ Keynote Speech
Recess	14:45-15:00	15'	Coffee Break
Session 1	15:00-16:00	60'	■ Session 1: Overview of Asia's legislative efforts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 Presentations and Debates
Recess	16:00-16:20	20'	Coffee Break
Session 2	16:20-17:50	90'	■ Session 2: Measures for legislative modification related to facility safety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 Presentations and Debates
Dinner	18:00~		

CONTENTS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개회식

개회사	8
법제처장 김 외 숙	
환영사	8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 익 현	
축사	10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Umar Hadi	

기조연설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문 동 주	
인재(人災)에 관한 법	8
한동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이 국 운	

Session 01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 개관	
발제 1 _ 아세안 재난 관리 체계	8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소장 Adelina Kamal	
발제 2 _ 대한민국의 재난관련 법령체계	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장 박 용 수	
토론 1 _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에 관한 개관	8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과장 Yordchatr Tasarika	
토론 2 _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분야 법제의 발전·정비 방	
법제처 행정법제관 최 중 진	

Session 02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발제 1 _ 인도네시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4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건설개발국 기획지부장
Dicki Rinaldi, ST, MT, M.Sc.

발제 2 _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 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104
한동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조 혜 신

발제 3 _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방안 124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나 채 준

토론 1 _ 자연재해 대응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중국의 법률
제정 148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농무·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 부국장
Wang Fei

토론 2 _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 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154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외사업팀장 배 정 주

토론 3 _ 우리나라의 내진대책 현황8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하 동 호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님과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멀리에서 와 주신 법제 전문가 및 재난 재해 관리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학계, 법조계 여러분과 주한 외교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제 발전의 경험을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교류, 협력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제5회 회의에서는 빈발하는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 현황과 법제화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난과 재해는 인간의 힘을 넘어 선 자연현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무분별한 개발이나 부주의 때문에 초래되기도 합니다. 재난과 재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며 특히 여성과 아동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재난과 재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과 시설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지진, 원전사고의 경우처럼 오늘날의 재난 재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난 재해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좋은 점을 서로 배움으로써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회의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김 외 숙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익현 입니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제5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본부장님과 한동대학교 이국운 학부장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는 아시아 국가의 법제와 정책전문가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법제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시 교통문제, 전자정부 등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선정, 토론을 통해 더 좋은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재난·재해”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재난과 재해는 상존하는 위험이 되고 있고, 세계화, 도시화, 기술화 등으로 새로운 재난과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 손실 등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과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자연적 재난과 재해는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예측과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한 피해확산방지, 사후적 복구 등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하여 재난과 재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재난 관리법제를 개선하고,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멋진 회의를 기획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외숙 법제처장님, 축사 및 기조연설로 자리를 빛내 주신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님,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님, 한동대학교 이국운 학부장님,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고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 익 현

■ 축하

김외숙 대한민국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귀빈,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아 축하를 전하게 됨을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주신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회의는 아시아 지역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이 특별한 회의는 참가국들이 법제와 관련된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중요한 포럼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법률가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자 소중한 네트워크가 되어왔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법률은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다시금 법률의 기능인 사회 공학의 개념을 점점하고 시대적 맥락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날 법률을 통한 통치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법제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본 회의의 주제로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재난과 재해 대응에 있어서 빈번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 현상들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재난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는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해와 재난이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12월26일 발생했던 쓰나미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6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해와 재난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제를 통해 국제협력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참가국들에게 매우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하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밀접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Umar Hadi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across the top and bottom of the page. The map shows the outlines of major landmasses including East Asia,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기조연설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문동주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인재(人災)에 관한 법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문 동 주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기조연설

Moon Dong Ju

Executive Director of Business and Management Division,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KISTEC)

▶ 학력

- 1987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2014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 Academic Background

- 1987 Bachelor's degree in Commerce and Trade, Dankook University
- 2014 Maste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주요경력

- 1988 ~ 2003 대통령경호실 사무관
- 2003 ~ 2009 대통령경호실 경호과장, 감사과장
- 2009 ~ 2012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부장, 인사부장
- 2012 ~ 2014 대통령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장
- 2015 ~ 2017.9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장
- 2017.9 ~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 Work Experience

- 1988 ~ 2003 Deputy Director,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 2003 ~ 2009 Manager of Protection Division & Manager of Inspection Divisio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 2009 ~ 2012 Director of Protection Division & Director of HR Department,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 2012 ~ 2014 Head of PSS Training Center,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 2015 ~ 2017 Director of Management Division,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KISTEC)
- 2017 ~ Present Executive Director of Business and Management Division,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KISTEC)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문동주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가. 서 론

한국은 성수대교 붕괴이후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국가주요시설물들의 안전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주요 시설물들은 법 제정 후 지난 20여년간 단 한건의 붕괴사고도 없이 양호하게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2011년 쿠타이 대교, 2009년 카푸아스 대교, 2004년 찌프네가라 교량 등 국가주요 시설물의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새로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인도네시아형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입법화하고자, 한국의 법체계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ODA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2014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다음 기술단이 사업수행자가 되고, KOICA가 주관사가 되어 2016년까지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인도네시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라는 장관령 입법초안을 완성하였으며, 현재도 한국 시설안전공단 간부1명이 자카르타에 상주하여 관련법안의 완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요를 살펴본 후 인도네시아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입법을 위한 사업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아세안 모든 국가가 벤치마킹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나.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제정 배경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전 한국에서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년에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었으나, 당시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조직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GDP는 12,000불에 불과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보다는 확충을 위한 신규 건설 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사망자 32명 · 부상자 17명 이라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회사의 육성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법의 특이한 점은 주요시설물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그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만큼 시설물 안전진단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 회사가 “제3의 눈 (third eyes)”인 공정한 평가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정부 주도로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함에 따라 공무원들



이 행정절차의 부실에 의한 결함을 감춰,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정밀안전진단은 “제3의 눈(third eyes)”을 가진 민간 안전진단회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만 시행함으로써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성수대교 붕괴,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② 주요내용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한국에서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최상위 법령으로, 총 6개의 장(Chapter)과 4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법령의 목적과 용어 및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와 주체 그리고 민간 안전진단회사의 등록 절차 및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 주체 등을 명기하였고,

4장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및 업무 범위가 기록되어 있으며,

5장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와 점검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명기되었고,

마지막 6장에서는 벌칙과 양벌 규정 및 과태료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상세를 규정하기 위한 하위 법령으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③ 대상 시설물

본 특별법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공동구 등 9개 종류의 시설물을 다루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중요도와 규모가 큰 시설물을 관리대상으로 하며, 이를 다시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이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 도모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외에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 KISTEC)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하는 대상시설물은 금년 9월 기준으로 총 85,498개소이며, 1종 시설물은 9,116개소 (11%)와 2종 시설물은 76,382개소(89%)로 이루어 있습니다.

④ 특별법의 성과

1995년 제정 당시 16개 시설물 종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현재는 9개 종류 40개 세부 시설로 질적·양적 측면에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변천 과정에서 본 법은 시설물 안전관리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시스템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본 법에서 지정·관리한 시설물들은 무사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취약한 등급을 받고 보수 예정인 국가주요 시설물은 약 0.08%로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양호(A, B)한 시설물이 전체의 95% 수준이며, 국민들의 시설물 안전 불안도가 65%에서 22%로 감소하였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 진단기술자교육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인적자원 및 기술력이 향상되고 관련 시장이 확장되었습니다.

아울러 법 제정이후 지난 20여년간 점검진단 대비 보수보강율이 점차 감소하였는바, 이는 국가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인도네시아 전파

2014년 12월 부터 2016년 12월 까지 2년간 KOICA에서는 ODA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해당사업의 사업수행자로 우리 공단과 다음기술단이 결정되어 2년간 사업수행 결과 “인도네시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라는 장관령 입법초안을 완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 실시 협약체결, 그해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콘소시엄 사업수행자 결정, 2015년 한국 국토부장관과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장관과의 “시설물의 안전관리 협력 MOU체결”, 2016년 한인니 시설물안전관리 협력회의 개최,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공무원단 3회 30여명 공단방문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 콘소시엄 특급기술자들은 2년간 약100여명이 인도네시아 방문 후 안전관리정책 프레임웍 수립, 피사빌라 교량 안전진단시험은 물론 진단기자재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코이카의 사업이 끝난 현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자체 예산으로 간부1명이 자카르타에 상주하여 “인도네시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라는 법안의 완성을 위해 입법지원과 관련 법령인 “도로시설 안전관리 장관령” 개정작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사빌릴라교 전경)



(인니 고위공무원 초청교육)



현지 워크숍 및 피사빌릴라교 시범진단

라. “시설물 안전관련법”의 아세안국가로 확산

여타 아세안 국가들도 국가주요 시설물의 노후화 및 붕괴 등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와 유사하게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를 수립함으로써 ①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②시설물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③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④아세안 각국의 환경에 적합한 시설물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및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⑤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형 “시설물 안전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시설물 안전관리산업이 발전함으로써 또하나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문동주



시설물붕괴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성수대교 붕괴, 1994년〉





인도네시아의 시설물안전관리 필요성



과적하중



과대 강우



쿠타이 교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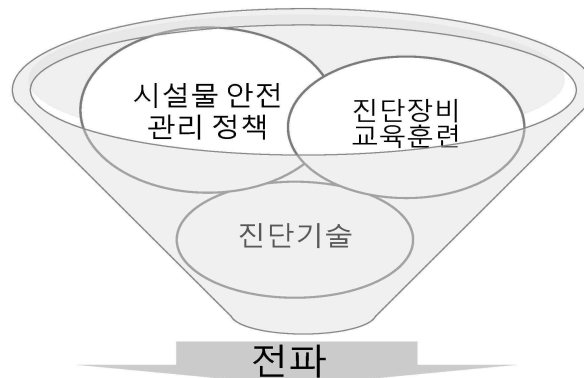


찌렌데우 교량

- 2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인도네시아형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 3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한국전쟁
(1950~1953)



급속한 개발...안전관리 법과 조직 미흡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성수대교 붕괴,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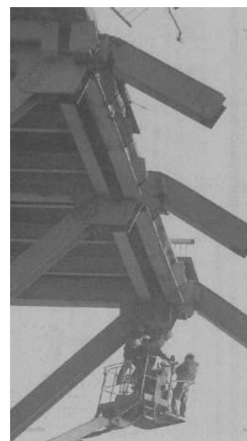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성수대교 붕괴,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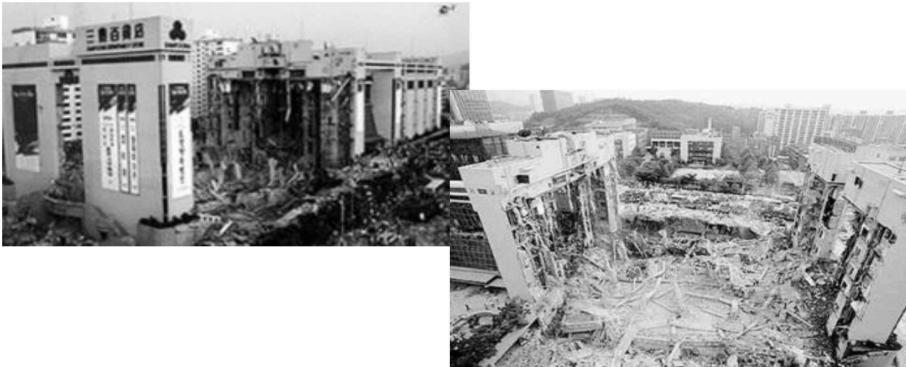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성수대교 붕괴, 1994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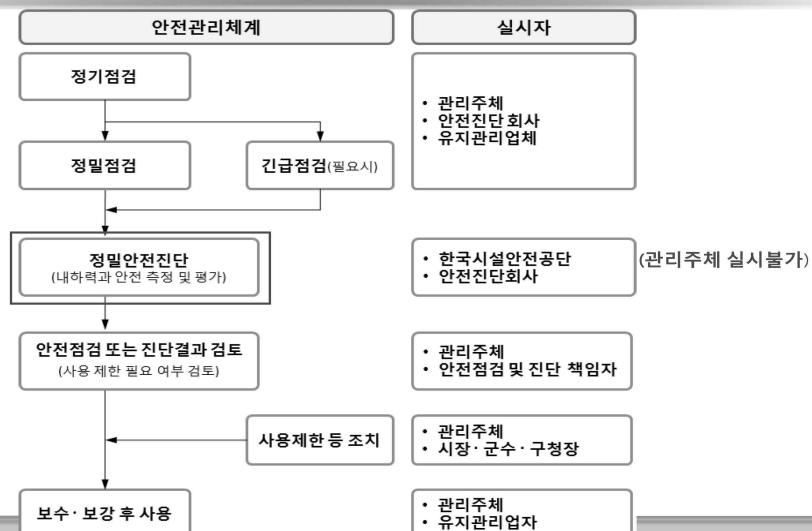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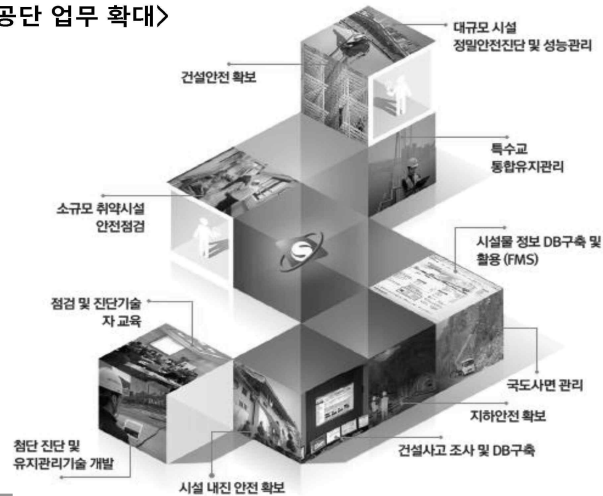
-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위주 -



KISTEK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 확대>



KIST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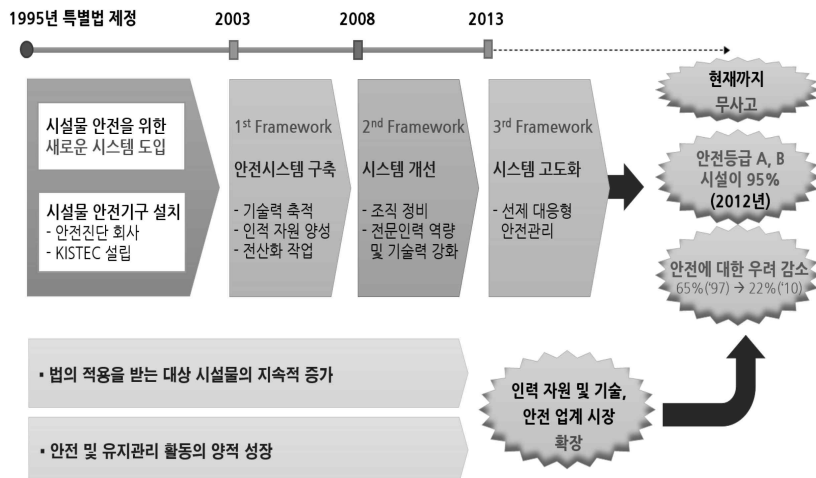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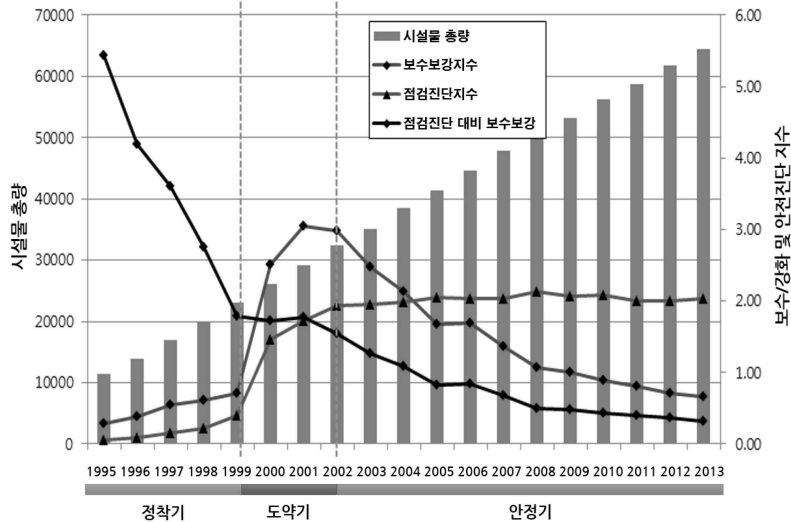
시설물 분류		총 시설물 수	안전 취약 시설물 (D,E 등급)	취약 시설물 비율(%)
시특별 적용대상 시설물	공공소유시설물	24,800	50	0.20
	민간소유건물	38,100	1	0.00
	소계	62,900	51	0.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적용대상 시설물	공공소유시설물	19,700	268	1.36
	민간소유건물	177,900	1,196	0.67
	소계	197,600	1,464	0.74
개별 법률 적용대상 시설물 (주택, 저수지 등)	공공소유시설물	71,700	N/A	-
	민간소유건물	658,200	N/A	-
	소계	6,651,900	N/A	-
총 계	공공소유시설물	116,200	318	0.27
	민간소유건물	6,796,200	1,197	0.02
	소계	6,912,400	1,515	0.0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성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과업 추진 경위

- 인도네시아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전사업요청(2012년)
- 인도네시아와 한국(KOICA)간의 사업실시 협약(2014년)
- 사업착수
 - 사업기간: '14.12 ~ '16.12
 - 사업수행자: 한국시설안전공단 콘소시엄
- 한국 국토부와 인니 MPWH간의 시설물안전관리 협력MOU체결('15.3)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과업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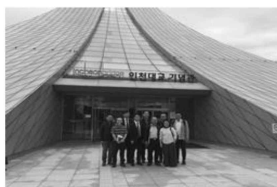
- MOU에 따른 1차 한인니 시설물안전관리 협력회의 개최('16.6, 자카르타)
- 협력회의, 기술전시회, 현장방문 등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과업 추진 경위

- MOU에 따른 2차 한인니 시설물안전관리 협력회의 개최('17.8, 서울)
- 협력회의, 현장방문, 비즈니스미팅 등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과업 내용 상세

○ 안전관리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 안전관리 체계수립 기본 방향 및 관련법, 제도 정비방안 제시
(관련 조직, 기관 설립 및 인력 개발 등)
- 교량진단 기술기준을 포함

○ 연수생 초청 교육

- 관리자 연수 : 프레임워크구축
- 실무자 연수 : 교량진단기술

○ 기자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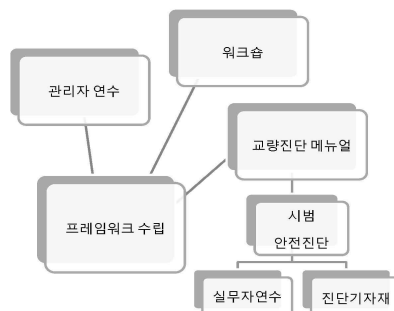
- 인니측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진단기자재 제공

○ 워크숍 개최

- 의견수렴,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 등

○ 시범안전진단

- 작성된 교량진단 기술기준을 사용
- 피사빌릴라교 교량 안전진단 수행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프레임워크

○ 안전관리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 교량안전진단 매뉴얼 포함

코이카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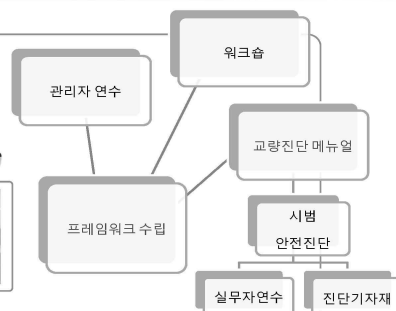
인니와 협의



발표 및 의견청취



전문가회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연수자 초청교육

○ 연수자 초청 교육

- 관리자 연수 : 프레임워크 구축 (2015. 9.20~26)



관리자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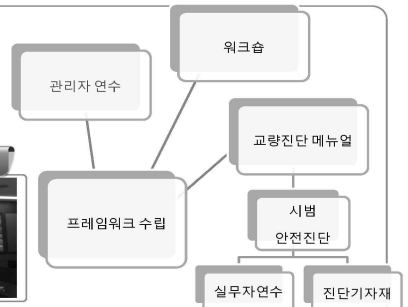
관리자 연수



관리자 연수



관리자 연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연수자 초청교육

○ 연수자 초청 교육

- 실무자 연수 : 교량진단기술 (2016. 2.15~ 3. 5)



실무자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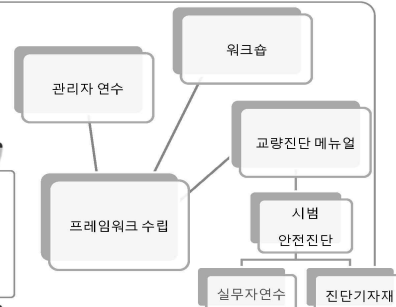
실무자 연수



실무자 연수



실무자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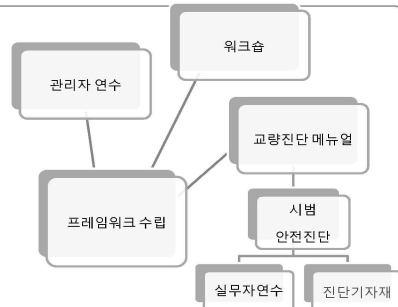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기자재 지원

○ 기자재 지원

- 정밀안전진단용 기자재 1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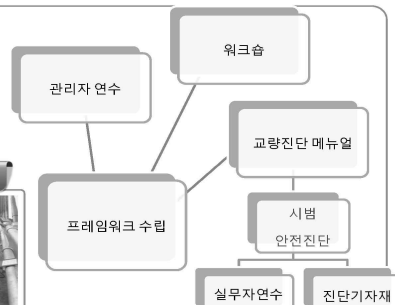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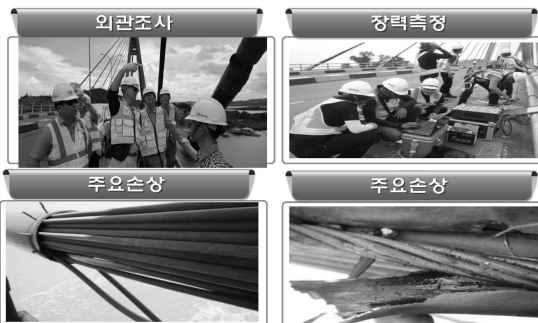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시험진단

○ 피사빌릴라교 시험진단 수행

- 시험진단 기간 : '16.3.14~6.11
- 대상 교량 : 피사빌릴라교(바탐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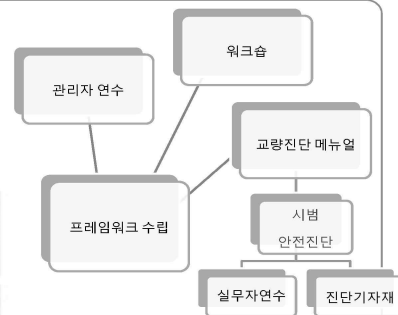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 전파

시험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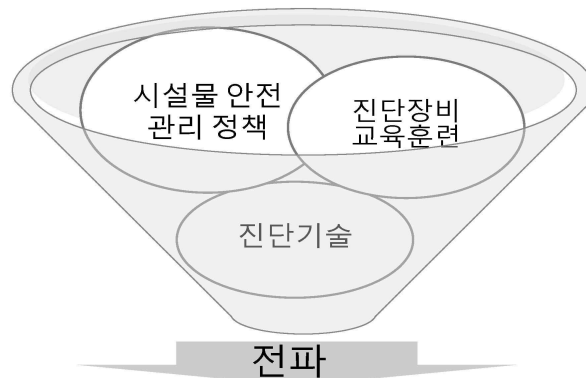
○ 피사빌라코 시험진단 수행

- 시험진단 기간 : '16.3.14~6.11
- 대상 교량 : 피사빌라코교 (바탐섬 위치)

시험진단 주요 조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세안국가 확산



전파

아세안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세안국가 확산

도입 효과?

- ✓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조직 정비
- ✓ 효율적인 시설물안전관리 법체계 수립
- ✓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 아세안 각국의 환경에 적합한 시설물안전관리 기술 발전
- ✓ 시설물 안전관리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감사합니다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It includes major landmasses like China, India, and Southeast Asia.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이 국 운

기조연설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부장 및 공익법센터 소장

Lee Kuk Woon

Professor of Law, Handong University,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of Law,
Director of the Handong Public Interest Law Center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Academic Background

- Bachelor's degree i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LL.M i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D. i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주요경력

-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
- 전미법률가재단
-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근무
- 법과사회이론학회 부회장
- 한국헌법학회 이사

▶ Work Experience

- Pepperdine University School of Law
- The American Bar Foundation in US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ociology of Law in Spain
- Vice president of the Law & Society Association in Korea
- Director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인재(人災)에 관한 법 (Law for human disasters)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존경하는 법제처장님, 인도네시아 학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동료 법학자 여러분

우선 시작하기 앞서,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을 다루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라는 중요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학 교수이자 법사회학자로서 관련 이슈에 대해 헌법학적 측면에서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변화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인류 문명은 가뭄, 한파,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태풍, 홍수, 기아, 전염병 등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자연재해에 관한 법(law for natural disasters)은 기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라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외부세계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재해가 우리 삶의 외부세계에서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도움을 외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외부세계는 우리 삶이 아닌 자연재해라는 ‘외부’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동시에 그 대응책을 발견할 수 있는 ‘외부’세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는 갑자기 자연재해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자연적인 반응이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연재해에 관한 법(law for natural disasters)은 위급상황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때까지 권력이 의도적으로 중앙집중화되는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법(law for natural disasters)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및 법체계를 포기하고 더 간단하고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유 민주주의하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권력의 분산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일종의 독재적 행태를 일시적으로 정당화 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법을 일시적으로 변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외부 세계를 밝혀내기 위한 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재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법은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규칙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신정정치를 같은 이유로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할리우드 재난 영화의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과 위급 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요?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 없이,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치 및 법체계를 포기하지 않고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위급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난의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산업화 이후의 재난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물 부족, 환경 오염, 신종 질병, 핵 위기, 정신 질환, 테러 위협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이 초래한 재난입니다. 사실 최근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자연적인 원인과 인조(人造)적인 원인이 결합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 쓰나미로 인해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사회에 정신적 불안정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적 그리고 인조적 원인의 결합은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거대한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재난의 객체인 동시에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인재(人災)의 원인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양해질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만들어 낸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자연 속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인조적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재와 미래의 재난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닌 문제를 야기하는 존재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면, 인간을 자연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에 의한 재난이 자연재해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인 권력의 중앙집중화나 일시적인 일종의 독재적 행태가 필요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재(人災)의 경우,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인간이 초래한 재난이기 때문에, 인조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에 대한 인식과 적용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재(人災)의 경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외부 세계를 찾기 보다는 재난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근대 초기 유럽에서 영국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영향력 있는 정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당시 일종의 인적 재난인 종교 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 제정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과 인재(人災)를 잘못 연결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기 전에,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이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재난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경솔하게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을 제정하기 보다는 이런 재난을 야기하는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위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이 인재(人災)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맞닥뜨린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인 동시에 문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재난위험 경감 시 나타나는 국가의 결정적인 역할 또는 중앙집권화된 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발생한 많은 비극적인 재난을 통해 국가와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거대하고 느려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 및 지방 공동체의 역할과 지속적인 지방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항상 재난이 발생하고 그 해결책은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해결책은 두 지역의 협력입니다.

하지만 헌법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난에 관한 법(law for disasters)은 응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적어도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 분야에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일상생활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심각한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와중에도 일상생활은 언제나 지속됩니다. 일상생활은 재난을 극복하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 아이디어, 연대감의 원천입니다. 응급상황에 관한 법(law for emergency)과 권력의 의도적인 중앙집중화 또는 일시적인 일종의 독재적 행태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을 마련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잠재력을 재발견할 때입니다.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에 관심이 많은 헌법학자로서,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법체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산업혁명 이후 그 어떤 법체계도 온전히 작동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국이 인재(人災)에 관한 법(law for human disasters)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경험과 교훈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across the top and bottom of the page. The map shows the outlines of major landmasses including East Asia,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제1세션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 개관



정 명 운

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Jung Myeong Yoon

Fellow / Office of Administrative Legal Researc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학력

- 일본 메이조(名城)대학 도시정보학 학사(1995-1999)
- 일본 메이조대학 대학원 법학 석사(2002-2004)
- 일본 메이조대학 대학원 법학 박사(2004-2007)

▶ Academic Background

- Bachelor's degree in Urban Informatics, Meijo University, Japan(1995-1999)
- Master's degree in Administrative Law, Meijo University, Japan(2002-2004)
- Doctor's degree in Administrative Law, Meijo University, Japan(2004-2007)

▶ 주요경력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2007-2009)
-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법률자문위원(2008)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녹색성장 법제TF팀장(2011)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2012-2013)

▶ Work Experience

- Research Fellow of Office of Administrative Legal Researc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07-2009)
- Legal Advisor of Rural and Urban Exchange Division,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08)
- Head of Green Growth Legislation TF Team at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11)
- Head of Office of Global Legal Researc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12-2013)
- Fellow of Office of Administrative Legal Researc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13-Present)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It includes major landmasses like China, India, and Southeast Asian archipelagos.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delina Kamal

발제 1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소장
Executive Director, AHA Centre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 학력

- 인도네시아 IPMI 비즈니스 스쿨 경영학 석사
- 호주 멜버른 모纳士대학교 경영학 석사
-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대학교 경영학 학사

▶ Academic Background

-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IPMI Business School, Indonesia
- MBA degree, Monash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 Bachelor's degree in Management, Trisakti University

▶ 주요경력

-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지속가능 발전부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부소장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소장

▶ Work Experience

- Dire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orat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Department
- Deputy Executive Director of AHA Centre(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 Executive Director of AHA Centre(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아세안 재난 관리 체계

아세안 지역은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 평균적으로 44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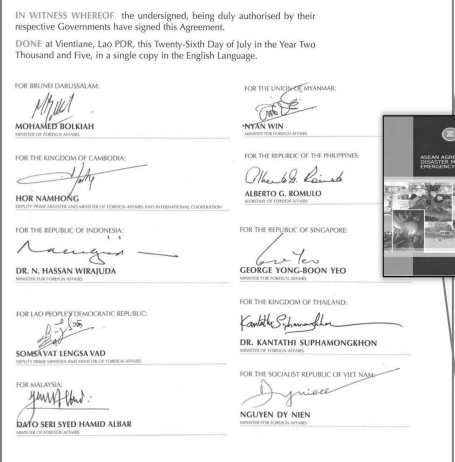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의 50% 이상(354,000 사망)이 아세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 손실은 9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출처: (1) 세계은행, 재해저감복구국재본부(GFDRR), 아세안 및 국제전략기구(UNISDR)에 의한 아세안 지역 재난 위험 재정 및 기술 지원 (2) 재난 관리에 관한 아세안 비전 2025.

사진 제공:
AFP

심각한 피해와 잦은 빈도로 인해 아세안은 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협약(AADMER)을 마련했고,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한 몇 달 이후 **2005년 7월**에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이에 서명했습니다.



- 아세안 지역의 재난피해 경감과 재난 긴급상황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목표를 둔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한 공동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령체계
- 위험 평가, 예방, 대비, 긴급상황 대응, 복구, 기술 협력 및 과학적 연구와 같은 재난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협약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가 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협약(AADMER)의 운영·조정 기관 및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는 근거

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협약(AADMER)(2005)과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2011) 설립에 관한 협약으로 인해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지역 운영·조정 기관으로서의 강력한 역할을 부여 받았습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때 협약당사자들간 그리고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협약20의1조 및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설립 협약3의1조)



재난관리 및 재난대응에 있어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가 해당 업무를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원기관에 요청한 경우, 이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협약20의2조 및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설립 협약3의2조)



2016년 9월 6일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지도자들이 서명한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ONE ASEAN ONE RESPONSE) 아세안 선언을 통해 재난관리 및 긴급상황대응에 있어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의 1차 아세안 지역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재난관리 및 긴급상황대응에 있어 1차 아세안 지역 조정 기관으로서 시민 및 군부대 협력이 포함된 고가용성 재해 복구(HADR)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ONE ASEAN
ONE RESPONSE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
(ONE ASEAN
ONE RESPONSE)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소속입니다. 긴급상황센터(EOC)는 재난을 추적 관찰하고 재난에 대한 아세안 공동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소속 긴급상황센터 (E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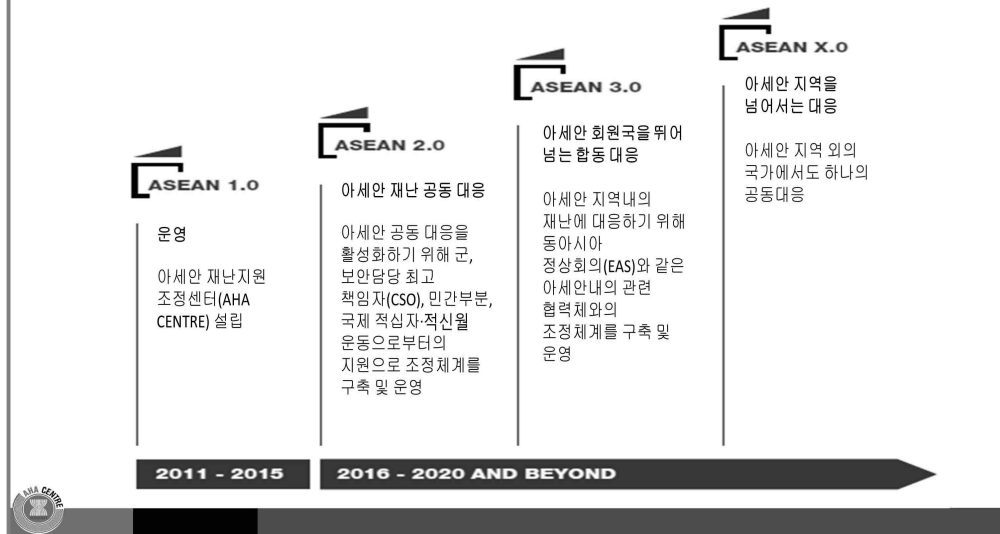
긴급상황센터(EOC)는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소속으로 재난을 추적 관찰하고 재난에 대한 아세안 공동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ONE ASEAN
ONE RESPONSE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의 설립 및 운영(ASEAN 1.0) 이후,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AHA Centre) 는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One ASEAN One Response)이후 다음 단계(ASEAN 2.0, ASEAN 3.0, ASEAN X.0)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관한 아세안
비전 2025 (ASEAN Vision
2025 on Disaster
Management)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제 리더가 되기 위한 비전



2015년 12월 재난관리에 관한 아세안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재난관리에 관한 아세안 비전 2025’는 아세안이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제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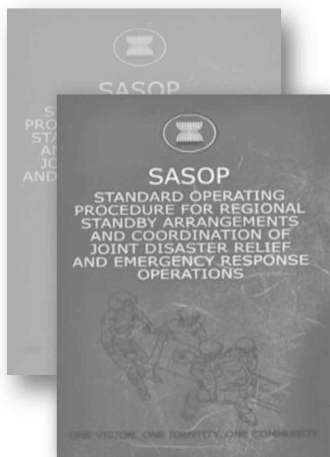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지역적·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준을 준수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재난관리와 긴급상황 대응에 있어 우수한 훈련과 리더십을 위한 조정기관이 되어야 하고, 차세대 리더와 훌륭한 리더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역 정책 공동체에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합동재난구호와 비상대응활동에 있어 지역대기준비 및 협력을 위한 표준활동절차(SASOP)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와 긴급상황대응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재난대비에 관한 지침

합동재난구호와 비상대응활동을 위한 절차

군부대 및 시민의 자산과 역량, 전문인력, 교통, 통신기술, 시설물, 상품과 서비스, 국경 없는 활동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

아세안 지역 재난 및 긴급상황대응 훈련(ARDEX)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론, 이 절차의 효용성을 시험하는 훈련





또한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가 합동재난구호와 비상대응활동에 있어 지역대기준비 및 협력을 위한 표준활동절차(SASOP)에 따라 실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 공지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최초 보고서를 분석하고 다른 당사자 및 재난기관에 공지합니다.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상황 보고서를 분석하고 주기적 또는 오전 10시 (자카르타 시간)에 다른 당사자 및 개발 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지합니다.

지원요청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다른 당사자나 기관에 요청을 전달합니다.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기타 가능한 지원을 찾습니다.

지원제공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그 제공된 지원을 당사자에 전달합니다.

재난상황 업데이트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지원이 재난지역에 전달된 지 24~48시간 내에 보고서를 받습니다.



요청된 지원에 대한 합동 평가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긴급대응진단팀(ERAT) 동원을 용이하게 합니다.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합동 평가를 통해 얻은 사실과 모든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고 받습니다.
-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지원을 위한 계약상 협약의 복사본을 전달 받습니다.

자원과 역량 동원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지원과 시설을 제공을 위한 면제처리과정과 인력과 기기 전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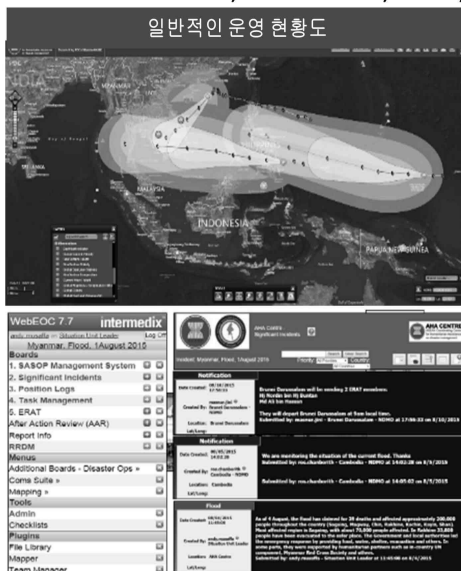
지원과 보고의 동원 해제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발전 된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피해를 입은 지역을 떠난 후 2주 안에 최종 보고서를 받습니다.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아세안 회원국과 동맹국들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공동플랫폼을 제공하고, 아세안 회원국, 동맹국, 이해당사자들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운영 현황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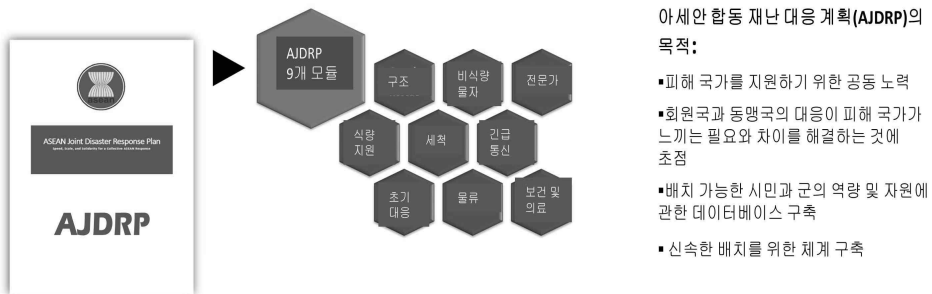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조정기구를 설립: (1) 자카르타에 있는 긴급상황센터(EOC), (2) 피해를 입은 국가의 수도이자 중앙 재난 관리 기관에 근접한 지역, (3) 현장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말레이시아 수방에 위치한 구호 물자 비축을 위한 재난 응급 물류 시스템(DELSA)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에 위치한 두 개의 다른 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One ASEAN One Response)을 실행하기 위해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재해 피해를 입은 회원국들에게 제공될 긴급구호를 위한 역량과 물자의 제공 속도와 양을 높일 목적으로 아세안 합동 재난 대응 계획(AJDRP)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 합동 재난 대응 계획(AJDRP)은 대응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형태로 발생 가능한 3가지 대규모 긴급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수마트라 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쓰나미



미얀마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는 아세안 지역대기준비 및 협력을 위한 표준활동절차(ASEAN-SASOP)를 시험하고 그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기적 훈련인 지역 재난 비상대응 모의 훈련(ARDEX)을 공동 조직합니다. 다음 지역 재난 비상대응 모의 훈련(ARDEX)은 인도네시아에서 2018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난 관리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 실행 프로그램(AHA Centre Executive Programme)이 2014년부터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000시간 과정을 이수한 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적어도 55명의 졸업생을 더 배출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적어도
100
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입니다.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It includes major landmasses like China, India, and Southeast Asian archipelagos.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박 용 수

발제 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장

Park Yong Su

Director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Division

▶ 학력

- 청주대학교 법학과 학사
- 영국 버밍엄대 행정학과 석사

▶ Academic Background

- Bachelor of Laws, Cheongju University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 주요경력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 재난안전실 재난대책과 행정사무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대책과, 조직실 제도총괄과 서기관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과 서기관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서기관
-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장

▶ Work Experience

- Deputy Director, Regional Development Division of Regional Development Bureau & Disaster Prevention and Policy Division of Disaster Safety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Director, Disaster Prevention and Policy Division of Disaster Safety Office & Policy Division of Organization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Director, Safety Policy Division of Safety Management Bureau,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Director, Safety Planning Division of Safety Policy Offic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Director, Creative Administration Division of Planning&Coordination Offic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Director, Planning Finance Division of Planning&Coordination Offic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Director of Disaster Management Police Division of Disaster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11.

대한민국의 재난관련 법령체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장



Contents

- I. 개요
- II. 재난안전법령체계
- II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구성 및 주요내용
- IV. 자연재해대책법 구성 및 주요내용
- V. 재난관련 법제 발전방향

I. 개요

1. 재난이란?



3

○ 재난(disaster, 災難) – 뜻밖의 불행한 일

- ☞ **dis**(이탈, 부정의 접두사) +
aster(star, 별) :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
- ☞ 災難 : 재앙 재, 어려울 난 → 재앙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 재해 :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2. 재난의 법적 정의



4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제3조1호)
- 재난의 종류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 (2013년 8월)
 - 자연재난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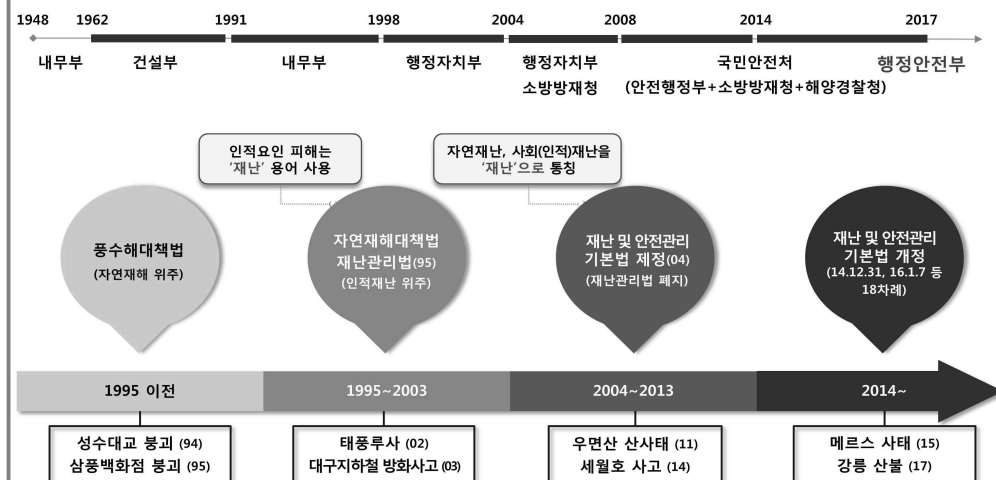
3.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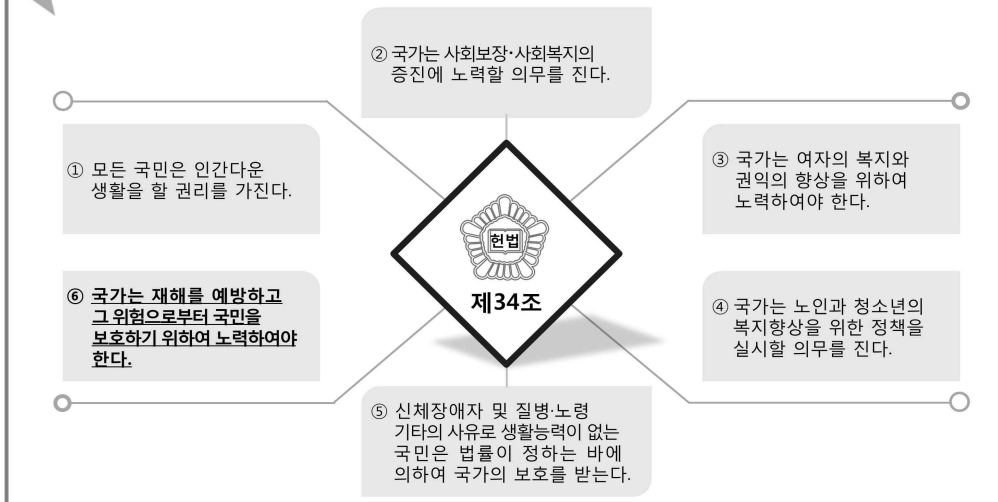
○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4. 재난관련 조직 및 법령 변천과정



Ⅱ. 재난안전법령체계

1. 헌법



2. 법령체계

-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소관)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관련한 재난안전관리 필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
 - * 특히,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개별법** :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각 부처가 구체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규정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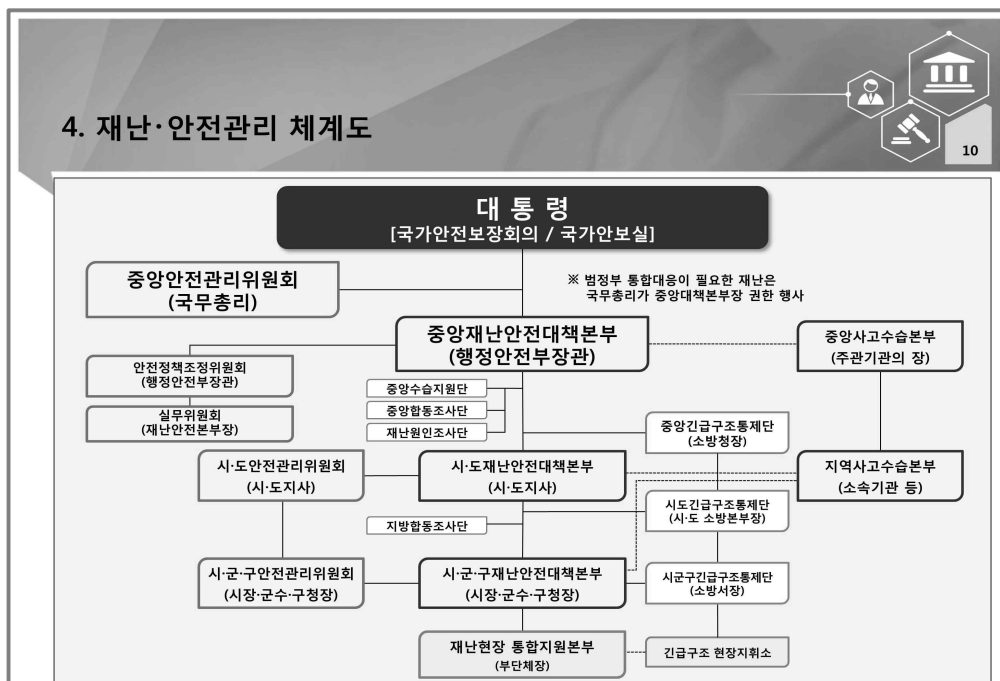




3. 재난·안전 관리기구



4. 재난·안전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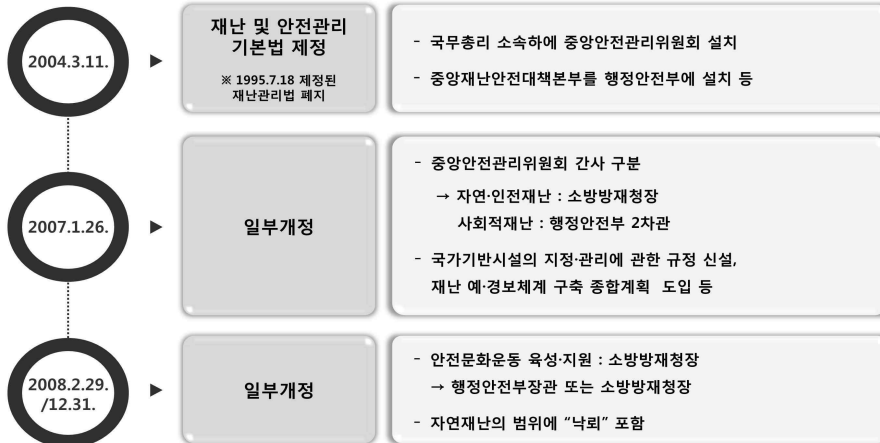


Ⅲ.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연혁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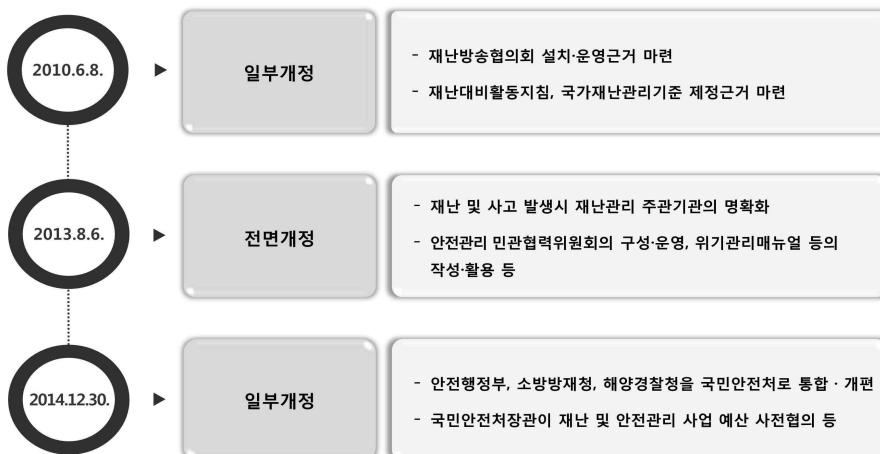
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연혁 - ②



12





2. 재난안전기본법 특징



13

1.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4단계로 편제
2. 안전관리기구¹⁾-계획²⁾-실행³⁾-이행수단⁴⁾을 총괄적으로 규정
 - 1)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
 -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 3)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운영, 재난관리기금 등 자원
 - 4) 안전감찰, 기관경고권 등
3.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중대본-중수본-지대본 연계)
4. 민관협업을 통한 재난·안전관리(안전문화운동, 다중이용시설 민간책임, 보험 등)

3. 재난안전기본법 주요 내용



14

1장 : 총칙	목적·정의·책무 (제1조 ~ 제8조)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국민의 책무 등 규정
2장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안전관리위원회 등 (제9조 ~ 제1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 ~ 제17조) - 상황실 운영, 재난 신고 (제18조 ~ 제21조)	안전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각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의 권한 및 범위, 수습지원단 파견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재난 신고 국내·외 재난상황 보고
3장 :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22조 ~ 제25조)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4장 : 재난의 예방	- 재난예방조치 등 (제25조의2 ~ 제29조의2) - 안전점검 시행 (제30조 ~ 제33조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국가기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방지시설 관리 긴급안전점검 및 정부합동 안전점검, 자료요구 재난관리 실태 공시,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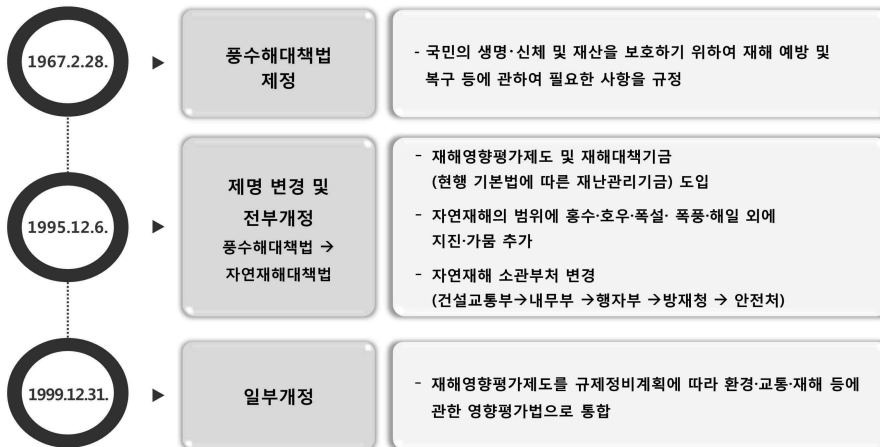
15	
제5장 : 재난의 대비	재난대비체계 구축 (제34조 ~ 제34조의8)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위기관리·상황 매뉴얼 구축 (재난분야, 다중이용시설) 국가재난관리기준 제정·운영, 통신수단 마련
	재난대비훈련 (제34조의9 ~ 제35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제6장 : 재난의 대응	재난사태 선포 등 (제36조 ~ 제38조의2)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위기경보의 발령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재난시 동원·대피명령 등 (제39조 ~ 제45조)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 응급부담
	응급조치 (제46조 ~ 제48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지역통제단장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긴급구조 등 (제49조 ~ 제52조의2)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긴급구조 현장지휘
	구조 대응계획 및 평가 (제53조 ~ 제5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재난대비능력 보강,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타 긴급구조 (제56조 ~ 제57조) 해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16	
제7장 : 재난의 복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58조 ~ 제59조의2) 재난피해 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관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60조 ~ 제61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 ~ 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 응급지원, 손실보상, 포상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8장 : 안전문화 진흥	안전문화활동 (제66조의2 ~ 제66조의10) 안전정보의 관리, 안전문화 시책의 추진 등
제9장 : 보 칙	특별교부세 (제66조의11)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
	재난관리기금 (제67조 ~ 제68조) 지자체별로 재난관리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
	재난 조사 및 관리 (제69조 ~ 제70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연구개발, 기술 (제71조 ~ 제74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연구개발 근거 등을 규정
	안전책임관, 재난보험 (제75조 ~ 제76조의2)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제9장 : 보 칙	징계, 권한위임, 벌칙 등 (제77조 ~ 제78조의2)



VI. 자연재해대책법 구성 및 주요내용

1. 자연재해대책법 연혁 - ①



1. 자연재해대책법 연혁 - ②



2. 자연재해대책법 연혁 - ③


19

2013.8.6.	일부개정	-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헌자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 포함 -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실시간 입력 및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근거 신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점검 및 방재관리대책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근거 마련 등
2014.5.14.	일부개정	- 중앙·지역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마련 - 재해지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설해대책에 친환경 제설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특징


20

1.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및 예방계획(풍수해저감계획, 우수유출저감 등)
3. 풍수해·해일·설해·가뭄 등 재난 유형별 대책
4. 기후변화 대비 각종 방재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 관리체계가 사회재난과 다르고, 기본법에서 다룰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별도로 운용



3. 자연재해대책법 주요내용(제1장~제2장)

21

총 칙	목적·정의·책무 (제1조 ~ 제3조)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국민의 책무 등 규정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각종 개발위원회 방재전문가참여(제8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4조 ~ 제7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제16조의2~제16조의3)	재해 원인조사·분석 (제9조 ~ 제11조) 재해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방재기준기타드라인 (제16조의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12조 ~ 제15조) 침수·유실·붕괴·고립·해일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로 세분화하여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수방기준(지하공간등) (제17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16조) 풍수해위험지구 유형별 위험성 분석 및 정비방안 제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기타)
	지구단위풍수방어기준 (제18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제19조 ~ 제19조의6)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에 관한 설치 기준 등 제시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제19조의7)	재해지도 작성·활용 등 (제21조 ~ 제21조의3)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 해안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
	내륙설계기준 (제20조)	해일피해조사·연구, 해일위험지구 지정 해일피해경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내설설계기준 (제26조의4)	설해예방대책 등 (제26조 ~ 제28조) 설해 경감대책 수립, 상설설해지역 지정 및 중장기대책 건축물관리자 제설 책임 등
		가뭄대책 등 (제29조 ~ 제33조) 가뭄 조사·연구, 제한 급수·발전, 수자원관리자 의무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중장기 대책 수립 등

3. 자연재해대책법 주요내용(제3장~제5장)

22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재해정보체계 구축 (제34조)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지진, 폭구, 구호, 보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긴급지원체계 구축 (제35조 ~ 제36조)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11개 긴급지원기능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7조)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댐 및 저수지 등
	방재관리대책 (제38조 ~ 제44조의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우수저류대책,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등 대행 및 대행자 등록 등 관리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제45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해유형별로 작성
재해복구	재해복구계획 (제46조 ~ 제48조)	복구계획 수립, 재해대장, 지구단위종합복구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공무원 육성 등
	재해복구사업 시행 (제49조 ~ 제55조)	복구사업 실시계획, 대규모 복구사업 시행, 발주계약 방법 재난지원금 선지급 및 복구비 집행잔액 승인, 사전심의 등
	재해복구 연차 보고 (제55조의2)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제57조)	지자체별로 총 복구비 300억원(보상비 제외) 이상시 수립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방재기술·방재산업 (제58조 ~ 제63조)	방재기술 연구·개발, 방재신기술 지정·관리 등

3. 자연재해대책법 주요내용(제6장)



23

보칙

방재기술 유지·관리 평가 (제64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 중앙본부장은 평가 실시
법교육성, 교육, 주민참여 (제65조 ~ 제67조)	방재기술 연구 법인 등 지원,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전국방재단연합회, 주민 의사의 정책 반영
손실보상 및 위반자 처분 (제68조 ~ 제69조)	재해위험지구 등 국고보조 재난지원금 지급권리 압류 금지
국고보조 및 압류금지 (제68조 ~ 제71조)	재해위험지구 등 국고보조 사유시설피해 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권리 압류 금지
한국방재협회 (제72조 ~ 제73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등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4조)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중앙본부장 평가·포상 (제75조)	
지역안전도 진단 (제75조의2)	시군구별 피해현황, 저감능력 등을 토대로 안전도 진단
권한위임, 벌칙, 과태료 등 (제76조 ~ 제79조)	

V. 재난관련 법제 발전방향



24

①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 반영 * 국회 개헌 논의 등에 반영 추진

- 개정(안) :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회재난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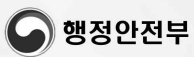
- 지자체의 위험성 평가, 사회재난 관리대책, 방재구역 설정 등 재난예방대책 등 포함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통일성 확보 및 기본법 위상 정립

- 기본법에 부합되지 않는 세부규정* 과다 * 의무보험, 소방관련 긴급구조 대응계획 등
- 법령간 재난관련 용어의 통일 필요(재난/재해, 예방/경감, 준비/대비 등)



감사합니다.





Yordchatr Tasarika

토론 1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과장

Director of Special Affairs Division,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 학력

- 콜롬비아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 브리스틀대학교 법학석사
- 탐마삿대학교 법학사
- 브리스틀대학교 법학사

▶ Academic Background

- Master of Law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 Master of Laws, University of Bristol
- Bachelor of Laws, Thammasat University
- Bachelor of Laws, University of Bristol

▶ 주요경력

- 2001~현재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과장
- 2014~2016 상법 및 산업법 부서 국가변호사 고문
- 2008~2014 교통법 부서 국가변호사 고문
- 2003~2008 공공금융법 부서 국가변호사 고문
- 2001~2003 외국 무역 및 지적재산권법 법률단

▶ Work Experience

- 2001~present Director of Special Affairs Division,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 2014~2016 Council of State Lawyer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Law Division
- 2008~2014 Council of State Lawyer of Transport Law Division
- 2003~2008 Council of State Lawyer of Public Finance Law Division
- 2001~2003 Foreign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Group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에 관한 개관

Yordchatr Tasarika (태국 내각사무처 특임과장)

먼저 저는 한국의 법제처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조직 담당자분 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간 법제 정보를 교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특히 이번에는 자연재해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현재의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와 매우 관련이 높은 사안으로, 정책 입안자와 입법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도전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세안 재난관리 매커니즘(ASEAN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에 대해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AHA 센터의 담당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표는 우리에게 아세안 회원국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지역 연대를 통해 달성 가능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아세안 재난관리 매커니즘

저는 이 특별 강연자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서 역할을 맡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담당국장님보다 AADMER(아세안 재난관리 긴급대응 협정)과 AHA센터의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아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원국 지원 조정에 있어서 AHA 센터의 업무 진행 성과와 높은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리며, 저의 토론을 회원국들의 법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의해 외국이나 국제 인권 단체의 특별 원조를 통해 대응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원조가 갖는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4년 ‘박성데이

(Boxing Day)’ 쓰나미와 같은 규모의 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었을 때 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재난 방지, 완화, 대응, 재건을 위한 지역적인 조정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강조되었습니다.

“협력”과 “조정”이라는 말은 AADMER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록 인도주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협력과 조정의 정신이 구속력 있는 법률 문서에 공식화되었고, 법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안 재난관리 매커니즘’의 성공에는 다음의 가능한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된 사안의 공통성과 위급성이 회원국이 신속하게 관리체계를 시행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지가 분명했으며, 각국에서 법안을 도입했을 때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와 야당은 재해의 조기 발견과 방지를 위한 일종의 과학적인 협력이 있다면, 재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적인 자원들이 공유되었을 때 이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지리적으로 계절적인 기후 위협에 취약한 지역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회원국들은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축적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법제적인 틀이 이미 어느 정도는 재발되는 자연재해 위협을 방지하고, 완화하며, 대응해 나가도록 마련되었습니다. AADMER 협정을 승인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법률적인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국가들이 협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법률 수정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AADMER 시행 시 고려되는 법제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을 태국의 법 조항을 간혹 참고해 보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2. 헌법상의 고려사항

국제협약의 의무를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는 헌법적인 필수조건들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법권에서, 입법부의 동의는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승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헌법상의 조건들은 서로



상이합니다. 태국의 경우, 헌법 178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주권적인 면에서 새로운 법적 조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국제협약은 행정부가 협정에 대한 준수 의무를 표명하기 전에, 입법부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적인 필요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재판소는 행정부의 행위를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무효화시킵니다. 비록 행정부의 위법적인 절차들이 승인 과정을 통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야기된 정치적인 파장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조직 구조, 그리고 기능 및 책임의 범위

다음은 AADMER 4조의 규정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협정의 의무를 이행 하는데 필요한 입법, 행정상의 조치 및 기타 여러 조치들을 취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일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검토하는 법률 입안자는 관련 의무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의 현 조직구조 및 이 기관들의 기능과 책임을 살펴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가 새롭게 건국이 된다면, 이런 일은 단순히 하나의 목적을 위해 새롭게 빌딩을 디자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잡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단일 감독기관이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하나의 법안 내에서 설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는 현재의 구조가 이미 자리 잡힌 상황에서 해당 정부들이 적절한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 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하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지 해결책은 “가장 가능한 조합(best possible fit)”이 되도록 여러 개별 기관에 관련 업무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신속한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식은 아닙니다.

2011년 대홍수로 인한 태국의 경험은 여러 교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태국의 농업경제에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공급 규정, 예를 들면 건기 동안의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과 우기 동안의 농작물 피해 방지는 정부 아젠다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협력부 산하 기관인 관개국(Department of Irrigation)에 강과 운하와 같은 수로 내 물 관리의 주요 책임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이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디지털경제사회부의 기상국은 기상 데이터를 전달하고, 관개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댐 저수용량을 벗어난 이례적인 강수량이 발생한 경우에 수로 주변의 도시와 마을을 포함한 태국의 범람원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강수 데이터가 지방정부에 전달되면, 해당 정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의 물을 가장 신속하게 배수 시스템으로 흘려 보내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된” 홍수는 도시/마을 계획이 조화롭게 설계가 되면, 가령 도시/마을 계획 수립이 지방정부의 협력을 동반한 내무부의 공공사업도시계획국(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and Country Planning)의 책임하에 있게 되면, 그 피해가 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도와 고속도로는 홍수 시 배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지방 차도의 설계와 건설은 지방 정부가, 공공고속도로는 교통부의 고속도로부(Department of Highways)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국가 계획과 조정 과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 입안자에게는 어떤 가능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한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부처간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 관리 계획 및 재해방지와 관련한 모든 부처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조정위원회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장점은 이 체계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관련 기관들의 현 기능에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계는 최소한의 과도적인 변화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일하게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한 기관을 이 위원회의 책임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어 그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집단 의사결정 기구와 관련한 내재적인 비효율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여, 이 기관과 관련되는 현 정부 기관들의 기능과 책임을 이 새롭게 설립된 기관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바라는 법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재정적인 면이나 인력, 행정적인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기관의 일부 기능이



새로운 기관으로 이전되더라도, 기존의 기관에서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이 계속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기존 기관들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며, 우선적인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결정하는 ‘조정 행위(balancing act)’입니다. 하지만, 조직 재편성을 통해 정부는 여러 많은 기관들을 정치적 목표에 맞게 재조정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한가지 고려사항은 한 국가가 긴급자금 지불을 위한 절차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공공자금 지불을 위한 절차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은 자금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일부 여유 규정을 두어 재난을 방지하고, 재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예산절차법 하에 특별규정을 두어 지방정부들이 긴급구호지역을 지정 선포하고, 최대 천만 바트(약 30만 USD)의 자금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즉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크진 않지만, 자연재해 대응에 매우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최소한 재해 상황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정규 예산에서 더 많은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이 예산 분배상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중앙긴급자금(Central Emergency Fund)’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산 법률상 허용된 특별예산 배분금입니다. 중앙긴급자금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국장(천만 바트 미만의 금액), 총리(1억 바트 미만의 금액), 또는 각료위원회(1억 바트 이상의 금액)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앙긴급자금 사용이 승인되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부기관이 이에 필요한 조건들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의 예산시스템은 어떻게 한 국가의 예산 및 재정상의 법률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설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률 입안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 중요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 승인을 위해 적절한 관할기관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지 ‘세심한 조사’가 중요한지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앙의 의사결정’과 ‘재해지역의 입장’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자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금 사용 관리를 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이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키거나,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구호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셋째, AADMER과 같은 지역적인 체계가 있는 곳에서는 해당 절차들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가능하도록 자금 지급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한 국가의 예산 및 재정상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AHA 센터의 설립으로 대외 원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회원국이 갖는 부담 중 일부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회원국은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가능하도록 나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의무사항에 유념해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회원국은 직접 재난 피해를 받은 경우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원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긴급 구호청

자연재해 발생시, 보통의 관료적인 행정기관은 재해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입법 체계는 이러한 특별 상황을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는 총리가 ‘행정법 B.E. 2534 (1991)’ 하에 모든 공무원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는 필요 시 어떤 기관의 공무원이건 다른 정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일반적인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특정의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됩니다. 첫째, 법률이 군대의 동원령과 같이 특정 권한이 행사되도록 명확한 절차를 제시할 때, 총리는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둘째, 공공의 자유를 제한될 수 있는 특별 권한 행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여행 금지 등, 총리나 관할 기관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러한 특별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차 말씀 드리자면, 이것은



‘조정 행위’입니다. 어떤 한 관할기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이 기관이 재량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에, 긴급 구호상황에서 재량권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태국은 2005년 긴급 구호상황 대응 행정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긴급 구호 상황이란 여기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여러 다른 긴급상황 중에서 특히 자연재해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법의 요지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군대를 포함한 모든 행정 분야의 명령체계를 간소화하고,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효과/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국가 관리센터의 수장은 재해 피해자 구호와 공공의 질서를 위해 필요 시 특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법은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서 거의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연재해 상황에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6. 결론

지역적인 계획수립, 감독, 조정 그리고 협력은 자연재해 발생시 생명과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 입법자와 정책입안자의 도전과제는 이러한 모든 계획 수립절차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본래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법체계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특별 권한들이 정당한 조건하에서 감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AADMER과 같은 지역적인 체제는 국가들에게 매우 필요한 계획수립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법률 시스템이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줍니다. 끝으로, 우리의 법제적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이번 포럼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특별 강연자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국가의 공공서비스에서 각자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최 종 진

토론 2

법제처 행정법제관

Choi Jong Jin

Director / Legislation Bureau of Administrative Affair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학력

- 한양대학교 경제학사(1997)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2009)
- 콜로라도대학교 행정학 석사(2015)

▶ Academic Background

- 1992 ~ 1997 Bachelor's Degree in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 2003 ~ 2009 Bachelor's Degree in Laws,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 2013 ~ 2015 Maste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s, Colorado University

▶ 주요경력

-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령해석관리국, 기획조정관실 서기관
-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담당)
- 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 법제처 법제정보과장
-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재난안전 분야 담당)

▶ Work Experience

- Deputy Director, Legislation Bureau of Economic Affairs, Planning and Budget Division & Bureau of Statutory Interpretat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Legislator, Legislation Bureau of Administrative Affair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Dispatched to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Director,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Divis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Director, Legislation Bureau of Administrative Affair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분야 법제의 발전·정비 방향

최종진 (법제처 행정법제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책법」등 현행 재난·안전관련 법령과 최근 심사의뢰되는 관련 법령안을 접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정부 법령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관으로서 재난안전 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법제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장님께서 우리나라 재난관련 법령체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와 함께 관련 법제의 발전·정비방향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재난관리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덧붙여 재난안전법제의 발전·정비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하여 발제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 체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분야의 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약칭합니다)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재해, 안전과 관련된 행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매우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율하는 법률로서 모든 재난과 안전분야의 기본법 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의 예방, 대응 등에 있어서의 총괄·조정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전 심의기구, 총괄·조정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책임기관 등을 미리 지정해 두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히 수습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총력적·거시적 차원에서 재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크고 작은 재난의 대응·수습 경험을 보면 1차 책임기관의 신속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같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재난 관리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의 응급·구조상황에서의 지휘권 확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은 그러한 점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재난대비훈련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드러진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 규정한 대로 일사분란하게 재난을 대응·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이 복합적이거나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권한이나 역할이 중복 되는 경우 어떻게 신속히 조정하여 유기적으로 재난대응을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재난발생시 초동대응능력을 높이고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조치나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사회재난 분야의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인식 되므로 자연재해 보다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재난의 예방·대비와 그 복구·환류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재난안전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발제자께서는 향후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재난 법제를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재난은 대부분 사회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되거나 그 피해가 커지므로 사회재난 분야를 별도로 체계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별도의 법률 제정이 과연 사회재난 발생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재난안전법이 여전히 모든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기본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3)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재난안전법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난법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재난을 대응·극복하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에 예방·대비활동을 얼마나 착실히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재난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평시의 안전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 체계상 재난안전법이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안전관리현장 또는 안전의날 같은 사항 외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념이나 가치, 안전관련 법령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 등 안전관리 법제에 기본적·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원리에 대한 사항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이 약 1,300여개의 이르며, 각 법령별로 그 체계와 안전관리 기준이 다르고, 일부 법령은 사업상 이해관계를 얹혀 규제 분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공통적·일관적 사항을 찾아내어 규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사회재난 분야에 대한 새로운 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안전관리 분야 강화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도 이해되는데, 안전관리 분야의 총괄·주무 부처로서 향후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행정안전부의 역할 확대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4)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대하여

발제자께서 국민의 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고, 저도 찬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법 등 개별법에도 국민의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께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항을 재난안전법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5) 재난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 강화에 대하여

최근 재난안전법의 분법이나 법의 구성 체계를 다양화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제정된 재난안전법의 제정 이유가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재난대응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여러 부처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므로 당초의 재난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해당하는 규정은 계속 재난안전법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안전법이 규율하는 재난관련 조직체계, 재난예방체계, 대응·복구체계, 재난 보험 등 피해 전보 체계, 재난관련 산업 진흥 등의 각 규정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자세하고, 기본법적 내용 보다는 실체적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점차 세분화해가는 만큼 재난안전법에 그 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개별법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재난안전분야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에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도 재난안전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가급적 법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령간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across the top and bottom of the page. The map shows the outlines of major landmasses including East Asia,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
-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제2세션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홍 성 곁

사회

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

Hong Sung Gul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학력

- 서울대 건축학과 (77-81)
- 서울대대학원 석사(81-83)
- 리하이대학 공학박사(87-94)

▶ Academic Background

- Feb. 1981 Bachelor's degree in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Feb. 1983 Master's degr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y 1994 Doctor's degree in Engineering, Lehigh University, USA

▶ 주요경력

- 한국지진공학회 회장(2011-2013)
- 한국콘크리트학회 부회장(2013-2015)
- 서울대 건축학과장(2013-2015)
- 서울대 중앙도서관장(2015-2017)

▶ Work Experience

- Ex-President of Korean Earthquake Engineering Society(2011-2013)
- Vice President of Korea Concrete Institute(2013-2015)
- Dir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2013-2015)
- General Directo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2015-2017)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It includes major landmasses like China, India, and Southeast Asian archipelagos.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Dicki Rinaldi, ST, MT, M.Sc.

발제 1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건설개발국 기획지부장
Subdivision Head of Planning, Planning of Evaluation Division,
Secretaria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 학력

- 반둥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 계획 공학
- 디본고로 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리옹 2 대학교 도시관리학 석사

▶ Academic Background

- Urban and Regional Planning Engineering -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 Master of Urban Planning - University of Diponegoro
- Master of Urban Management - Universite Lyon II

▶ 주요경력

- 2013~2015 협력지부장, 기획부, 건설개발처, 공공사업부
- 2015~2016 행정지부장, 협력 및 자율경영부, 건설개발국, 공공사업주택부
- 2016~현재 기획지부장, 평가기획부, 건설개발국, 공공사업주택부

▶ Work Experience

- Subdivision Head of Planning, Planning of Evaluation Division, Secretaria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 October 2016 until Now
- Subdivision Head of Administration, Directorate of Cooperation and Empowerment, Directorate General of Construction Develop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 July 2015 until Oct 2016
- Subdivision Head of Cooperation, Planning Division, Construction Development Agency, Ministry of Public Works - March 2013 until Jul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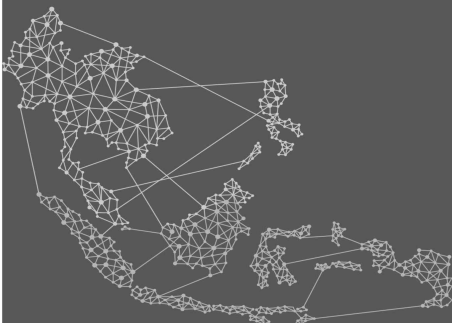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 11. 1.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 관리 역량강화

전반적인 사업내용 및 진전사항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목차

1. 법제 필요성	03
2. 양국 비교	05
3. 사업 개요	07
4. 사업 세부사항	09
5. 기본체계	11
6. 사업수행계획	15
7. 향후 계획	16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1. 법제 필요성

인도네시아



쿠타이 교량(Kutai Bridge)



시렌두 댐(Cirendeu Dam)

한국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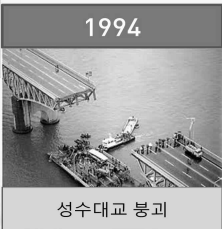

3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1. 법제 필요성



1994



성수대교 붕괴

1995

한국시설안전공단 (KISTEC) 설립과 법 제정

2003

교량 점검 매뉴얼 정비 (객관적이고 품질이 향상된 매뉴얼)

8년 유지 경험

1993

교량 점검 매뉴얼(IBMS)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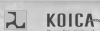
2011

여전히 교량으로써의 역할 수행 불가능



쿠타이교 붕괴(Kutai Kertanegara)

유지·관리, 법제, 예산마련 관련 세 부지침 필요




4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2. 양국의 특별법 비교



한국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약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도네시아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약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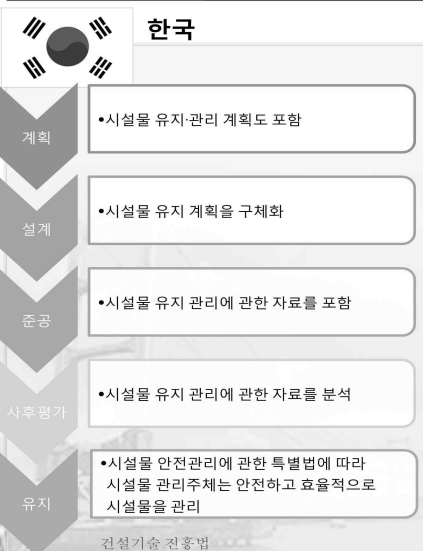


KOICA
KISTEC

5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2. 양국의 건설 관련법 비교



KOICA
KISTEC

6

인도네시아

법령	내용
법 제18호(1999)	건설 사업
정부령 제28호(2000)	건설 부분 공기업과 공적 역할
정부령 제29호 (2000)	건설 시행
정부령 제30호(2000)	건설사업 진흥
정부령 제4호(2010)	건설 부분 공기업과 공적 역할
공공주택사업부(MPWH)령 제8호(2011)	건설사업 하위분류 및 자격하위분류 부서

건설 관련법에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3. 사업 개요



성남
KOICA
일산
KISTEC

사업수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명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 사업

규모
총 185만불(인도네시아 분담금 제외)

기간
2014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29일

자문
한국시설안전공단(KISTEC)(다움 건설사 (Daum Engineering Co)와 협력)

사업수행지역
자카르타와 바탐섬(Batam island)에 위치한 피사빌라교(Fisabilillah Bridge)(시범 안전진단)



바탐 교량 (Batam Bridge)
자카르타 공공사업 주택부 (JAKARTA MPWH)




7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3.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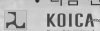
사업내용

- 인도네시아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안전관리 기본체계 제안
 - 훈련 및 워크숍
 - 안전진단 매뉴얼 및 기본장비 제공
 - 시범 안전진단 등.





피사빌라교(Fisabilillah Bridge)에 대한 시범 안전진단 예정
❖ 다움 건설사(Daum Engineering Co., Ltd)가 시범 안전진단 사업에 일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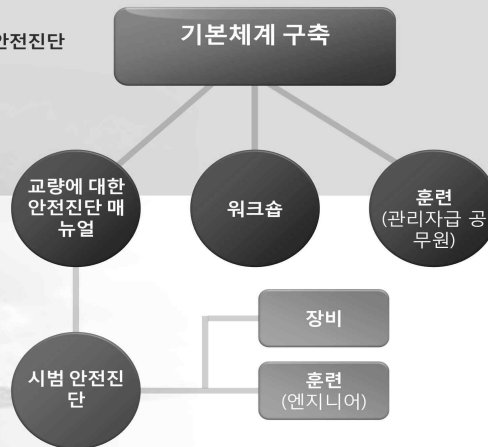

8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4. 사업 세부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체계 제안서 제공
- 워크숍(6회)
- 피사빌릴라교(Fisabilillah Bridge)에 대한 시범 안전진단
- 한국에서 진행된 훈련 프로그램
 - 관리자급 공무원 : 10명 / 7일
 - 교량 엔지니어 : 10명 / 21일
- 안전진단 장비 제공



KOICA
KISTEK

9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4. 사업 세부사항

- 목적
 - 피사빌릴라교(Fisabilillah Bridge)에 대한 시범 안전진단
- 기간
 - 2016년 3월 14일 ~ 6월 10일
- 참여자
 - 공공사업추진부(MPWH)의 실무자 12명
- 강사
 - 한국시설안전공단(KISTEC)과 다음 건설사(Daum)
- 활동
 - 육안검사, 비파괴검사(NDT), 재하시험, 인장시험 등



KOICA
KISTEK

10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5. 기본체계_ 사업수행담당자(PIU) 회의/협의/워크숍

절차

- 사업수행담당자(PIU) 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 논의
- 법령 입안에 대해 공공사업주택부(MPDH) 공무원 및 교수들과 논의
- 워크숍을 통한 의견 교류
- 인도네시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최종 기본체계 제안서 마련



KOICA
KISTEK

11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단·중·장기 계획



KOICA
KISTEK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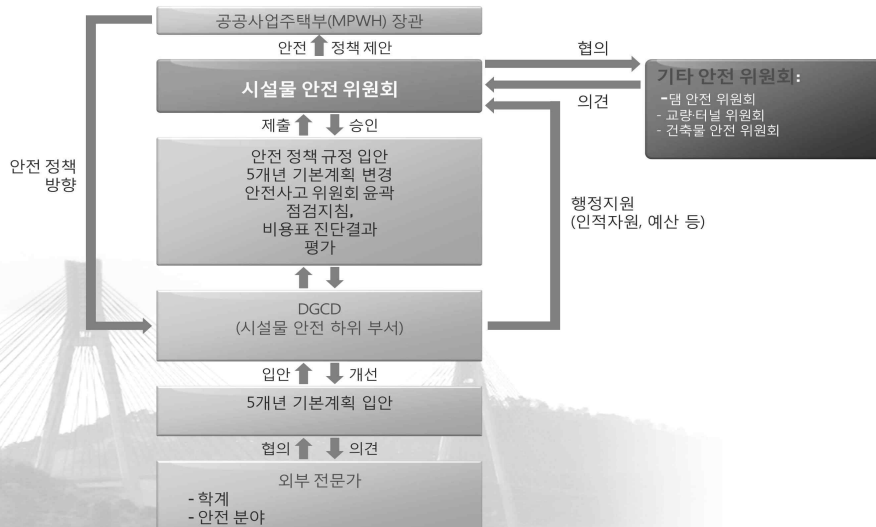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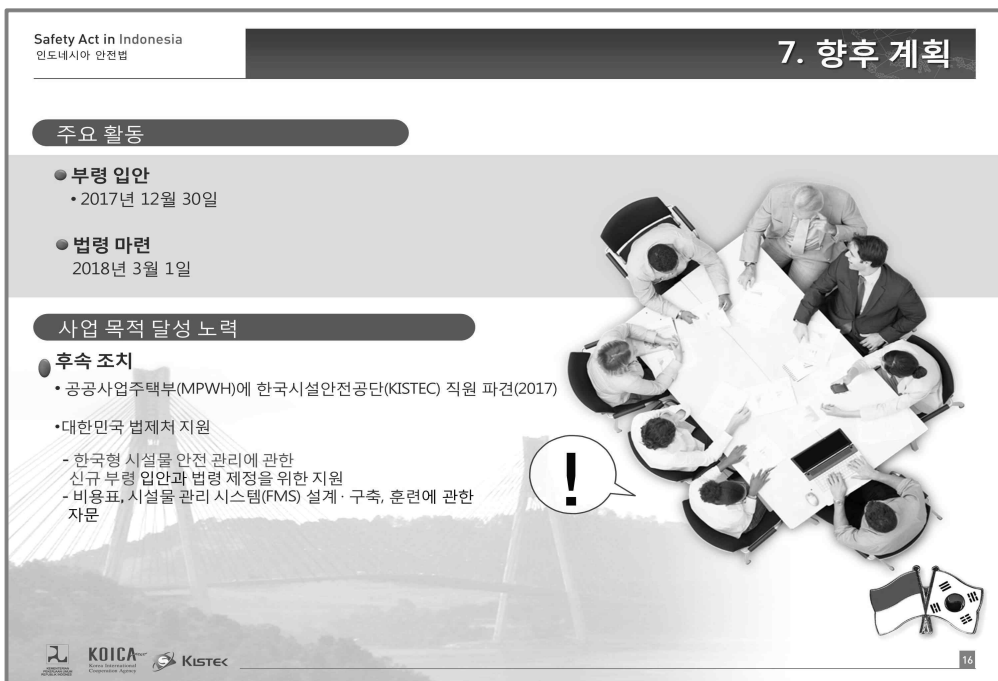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안전관리 기본체계(단기)



Safety Ac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안전법

운영체계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조 혜 신

발제 2

한동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Cho Hye Shin

Assistant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 학력

- 1998. 3. ~ 2002. 8. 연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3. 3. ~ 2006.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경제법)
- 2006. 3. ~ 2011.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경제법)

▶ Academic Background

- Ph. D. in Law,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Master of Law,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6)
- LL.B.,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2) (Award: Honors)

▶ 주요경력

- Visiting Lecturer, Life University at Shihanoukville, Cambodia (2009 ~ 2010.)
- Visiting Lecturer, Huree University at Ulanbaatar, Mongolia (2010)
- Visiting Scholar, Tuebingen University at Tuebingen, Germany (2010)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강사 (2012 ~ 2015)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2011)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 ~ 2015)
- 한동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2015 ~ 현재)

▶ Work Experience

- Visiting Lecturer, Life University at Shihanoukville, Cambodia (2009 ~ 2010)
- Visiting Lecturer, Huree University at Ulanbaatar, Mongolia (2010 ~ 2010)
- Visiting Scholar, Tuebingen University at Tuebingen, Germany (2011 ~ 2011)
- Lecturer (part time),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Seoul, Korea (2012 ~ 2015)
- Visiting Researcher,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1)
-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1 ~ 2015)
- Assistant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2015 ~ present)



제5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동대학교 법학부
조 혜 신

I. 서론

연구의 목적

- ▶ 한국의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의 발전과정과 운영실제를 분석함
- ▶ 인도네시아와 같이 각종 자연재난 혹은 사회재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법제의 미비로 말미암아 정비가 시급한 여러 국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교량, 터널, 댐, 건축물 등 시설물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서 그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 서론
- ▶ 한국 시설물안전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 성과
- ▶ 인도네시아의 효과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 ▶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방안 제안



Ⅱ. 한국 시설물안전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 성과

한국 시설물안전법의 도입 배경

- ▶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신규 건설사업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건설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
- ▶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국가 주요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율하였으나, 시설물의 준공 이후 안전 및 유지관리와 같은 사후관리 측면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었음.
- ▶ 특히, 1994년과 1995년에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남겼으며, 시설물 안전유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
- ▶ 이에, 1995년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점검과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그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4922호, 시행 1995. 4. 5)을 제정·공포 하였음. 그 후 이 법은 16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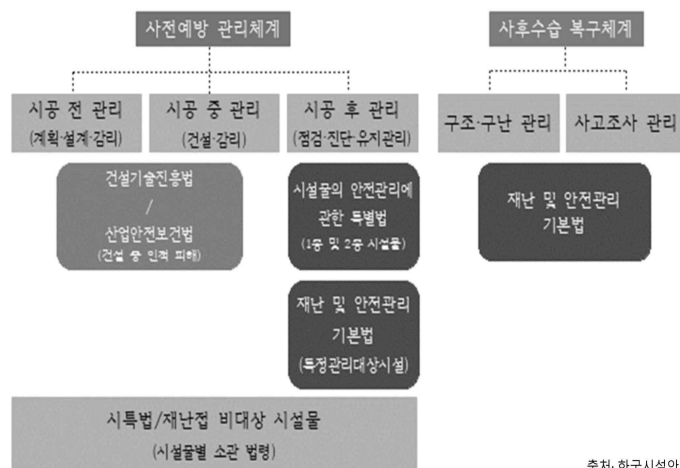
성수대교 붕괴사고

일시: 1994. 10. 21 (금)
장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대교
피해: 사망 32명, 부상 17명
원인: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의 연결이음새의 용접 불량과 유지관리 소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일시: 1995. 6. 29, 오후 5시 55분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5-3번지
피해: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원인: 부적절한 건축 및 구조 설계계획, 부실시공

한국 시설물안전법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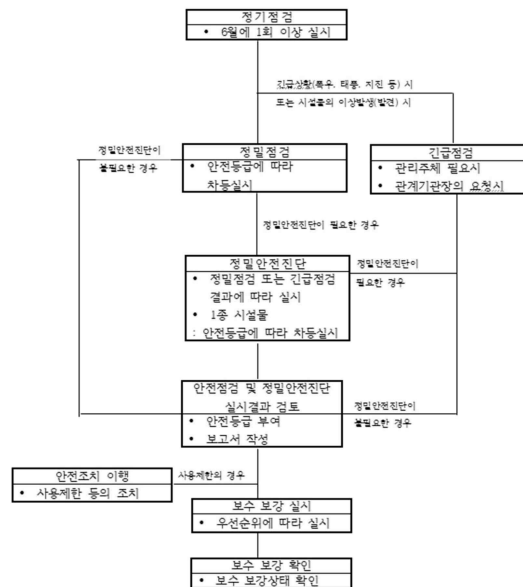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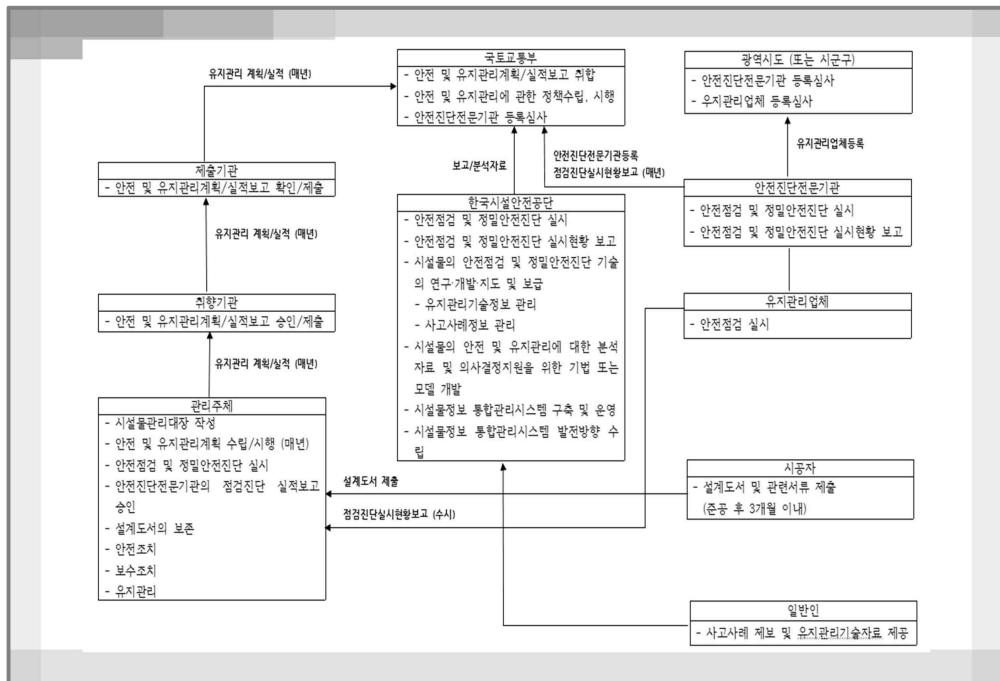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2016)



한국 시설물안전법의 주요 내용

- ▶ 목적 및 정의 (제1조 및 제2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 (제3조~제5조)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제13조)
- ▶ 시설물의 안전조치 (제14조~제15조의2)
-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제16조)
- ▶ 한국시설안전공단 (제25조~제32조)
- ▶ 실태점검 (제33조의2)
- ▶ 사고대응 및 사고원인조사 (제33조의3)
- ▶ 벌칙





한국 시설물안전법의 성과 및 주요 현안

- ▶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 ▶ 시설물안전법과 재난안전법의 이원적 체계
 - ▶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이 적용되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 ▶ 2017년 1월 17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재난안전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였음
-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
- ▶ 시설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문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Ⅲ. 인도네시아의 효과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ASEAN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공조

- ▶ ASEAN VISION 2025 ON DISASTER MANAGEMENT(2009)
- ▶ 2009년 12월 아세안의 재난관리 및 긴급사태에 관한 협정(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 ▶ 재난관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조정센터(2011)
- ▶ 재난관리협력의 증진에 관한 선언(2013)
- ▶ 재난복구 및 제도화에 관한 선언(2015)

인도네시아 재난·재해 대응체계

-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는 국가이지만,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의 실행 역량 부족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더하여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음.



Cipunegara Bridge
2004년 7월 23일
과적으로 인한 붕괴



Kapuas Timpah Bridges
2009년 4월 3일
설계오류로 인한 붕괴



Kutai Kartanegara
2011년 11월 26일
인재

- ▶ 2004년 쓰나미 이전까지는 대통령령만이 존재하였음. 하지만 그 후 2007년 4월 유도요노 정부는 최초로 **재난극복법(UUPB)**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오늘날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음.
- ▶ 2008년에는 **국가재난방재청(BNPB)**이 설립되었는데, BNPB의 의의는 대통령이 관할하는 정식 정부부처가 되었다는 점임. 이전의 다양한 재난관리 기구들이 주로 조정기능을 수행하였다면 BNPB에는 재난대비에 관한 연구와 교육, 정책수립 그리고 정책실행 등을 실제로 총괄하는 지휘부의 역할이 부여됨.
- ▶ 2004년 쓰나미는 국제기구(특히, UN)와 외국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재난방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음. 현재 100여 개의 외부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한 재난대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음. 한국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KOICA와 연계하여 서부 자바에서 홍수 조절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EW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제도 및 기구 혁신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관련 공무원 및 책임자들의 인식 및 업무숙련도 제고
 - ▶ 안정적 재정 확보
 - ▶ 특정 지역(자바와 수마트라 섬)에만 편중되어 있는 재난방지 정책 및 시설
 - ▶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공조 체계 구축

IV.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방안 제안

인도네시아 시설물 안전 관련 법령 현황 및 과제

- ▶ 현재 시설물 안전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법에서도 완공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음.
- ▶ 주요 시설물 중에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 and Housing, MPWH)가 관할하는 교량 및 터널, 건축물, 댐 등에 대해서 각각 부령 제41호, 제16호, 제27호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 별도의 관할 부서와 기준이 존재함. 그리고 이들의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은 건축물법 제28호임.
- ▶ 시설물 안전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관할 부서에서 소관 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으며, 전문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업체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음. 결국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관리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먼저, 시설물안전법제의 전반적 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는바, 종래 부령 단위에서 산재해 있는 시설물 관련 규정을 아우르는 **시설물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임. 여기에는 시설물의 정의 및 분류, 시설물안전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주체 및 기준의 근거, 주요 금지행위 및 제재 등 핵심적 사항이 담겨야 할 것임.
-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용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사고 발생시 공중에 심각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주요 시설물을 선별하여 이를 엄격한 기준 하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임. 이러한 점에서 **한국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임.
- ▶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같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재정확보와 인력양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차선의 방안으로서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이하에서는 이상의 주요 시사점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 시설물안전법의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인도네시아 시설물안전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법률에서는 정의 조항이 목적 조항에 앞서 위치한다고 함. 그렇다면 이 법안의 경우에도 그러한 통상의 예를 따라서 정의 조항이 목적 조항 앞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여기에서는 목적 조항이 앞에 위치하는 것이 논리상 적절하다고 보는 한국법의 예를 따라서 목적 조항을 제1조에 위치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조(정의) 1. "시설물" 2. "1종시설물" 3. "2종시설물" 4. "관리주체" 5. "공공관리주체" 6. "민간관리주체" 7. "안전점검" 8. "정밀안전진단" 9. "유지관리" ※ 각 호의 구체적인 정의는 한국 시설물안전법과 유사하므로 생략함	- 인도네시아 시설물안전법 제정의 의의는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종시설물' 범주를 신설하여 각별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있다 할 것임. - 다만, 교량, 터널, 댐, 건축물 등 각각의 시설물을 관할하는 조직과 이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물안전법 제정을 통하여 이들 시설물 중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1종시설물'로 분류하고, 이를 별도의 기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상당한 범위에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동의와 협조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논의와 설득 과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할 것임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공공사업주책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공공사업주책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장관령 제정 논의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중장기적 계획 하에 시설물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에 관한 논의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 한편, 한국 시설물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리주체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계획 및 계획은 시설물안전 관련 법과 정책이 지속성·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및 계획을 인도네시아 시설물안전법의 주요 사항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인도네시아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관련 법률로서 건축법이 존재할 뿐인데, 여기에도 시공 후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함. 제4조는 시설물과 관련이 있는 타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이 법이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한국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하에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21개 조항, 그리고 '제2절 안전조치 등'에 7개 조항이 있음. 하지만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며, 법률의 체계도 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절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조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것을 제안함. • 한국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안전조치를 크게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누고, 다시 제6조에서는 안전점검을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나누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법 시행 초기에는 안전점검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기에 앞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각각을 먼저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혹은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 특히,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스스로 할 것인지 혹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에게 위임할 것인지 여부를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이 경우에 관리주체가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회피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 해당 실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법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의무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민간관리주체의 부담을 가급적 가볍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법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좋을 것이나, 이 문제 역시 법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제6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혹은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정밀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한국 시설물안전법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에서는 안전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되,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유사한 기관의 설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 없을 것이나, 만약 향후 그러한 기관이 설립된다면 1종시설물 중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단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 인력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와 유지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 인력·장비·자본금 등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공사업주택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 혹은 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혹은 유지관리업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한국의 경우, 현행 시설물안전법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 조항은 1999년 1월 29일 개정에서 삭제되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19조 내지 제24조가 삭제된 것임.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사정이 그와 같이 않으므로 유지관리업자의 경우도 안전진단전문기관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도를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10조(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공공사업주택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최근 2년간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9. 최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0.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1.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3.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 등록제도를 두는 목적은 이들의 자격, 업무수행, 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여기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수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10조 각 호는 인도네시아의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를 하는데, 동법의 의무들은 빠짐 없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그 중 등록취소 처분의 결정에 처분청의 재량을 두지 않아야 할 것들도 선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이행을 더욱 강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10조 각 호 중 하나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한국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러한 행위의 발생 우려가 있다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혹은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①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의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들에게는 불리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조사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조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는 것임.
제12조(시정명령)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공공사업주택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통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 및 공공사업주택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이행) ①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공사업주택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이행하는 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가 긴절하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제16조(긴급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공사업주택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한국 시설물안전법의 경우에는 제33조에서 공공관리주체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논의 중인 장관령 제정안에서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과연 민간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그렇다면, 이것이 (민간을 포함하는) 관리주체에 지나친 부담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이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제18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① 관리주체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를 공공사업주택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 시설물안전법 제17조의 예를 보면,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당하는 기관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를 한국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되, 가장 중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한국 시설물안전법 제17조제5항과 같은 서류열람 혹은 사본교부 청구권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제1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은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전반적으로 ‘부령’ 형식의 하위법령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람직하기로는 동법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수준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제20조(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제9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5.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인도네시아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가능성 여부 및 운영 역량을 고려하여 취급 정보를 정하여야 할 것임.



제3장 시설물안전위원회

제21조(시설물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물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주택부장관 소속으로 시설물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및 권고
2. 제3조에 다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의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제개정 및 운용에 관한 권고
5.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기관의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영업 정지에 관한 심의 및 권고

...

N.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설물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시설물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시설물안전위원회(Facility Safety Commission)의 설치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설물안전 관련 법제정비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음.
- 이것은 한국의 시설물안전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각종 시설물 안전 담당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단계별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간 의사소통과 협의의 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같은 전문적 상설기구의 설치가 여의치 않은 법 집행 초기 단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기관과 관련한 등록·등록증 발급, 등록 취소·영업정지 등에 있어서,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향후 시설물안전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위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제재 및 기타

제22조(제재)

- 한국 시설물안전법의 예를 살펴보면, 동법상 각종 의무의 이행이 형사제재를 통하여 담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형벌의 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심지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음. 그리고 이는 제정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거쳐 왔음.
- 시설물안전과 관련된 의무의 불이행은 공중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서,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우며, 엄정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법 준수를 강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인도네시아 시설물안전 관련 법제정비의 논의과정에서 벌칙이 고려되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임. 따라서, 법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혹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행위유형과 그에 대한 형벌의 수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벌칙조항이 현재의 논의에서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면, 일단 제10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를 통한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법 집행을 틀을 마련한 후에, 향후 형사적 제재로 그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임

제23조(사고원인조사)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공사업주택부장관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은 공공사업주택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사업주택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나 채 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3

Na Chae joon

Senior Researcher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 학력

- 1996 경희대학교 법학과
- 2002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2009.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 Academic Background

- 1996 BA in Law, KHU University
- 2002 MA in Administrative law, KHU University
- Ph.D in Administrative law, KHU University

▶ 주요경력

- 2008 ~ 2011 : 경희대학교 강사
- 2010 ~ 2011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2011 ~ 2015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
- 2014 ~ 2015 : 국무총리실 정부평가 위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민간위원
- 2015 ~ 2016 : 국민안전처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17 ~ 현재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Work Experience

- 2008 ~ 2011 : Lecturer of KHU University
- 2010 ~ 2011 : Visiting Researcher of KLRI
- 2011 ~ 2015 : Associate Researcher of KLRI
- 2014 ~ 2015 : Member of Government evaluation committee, Prime minister
Member of Specialist for disaster safety, National Security Agency
- 2015 ~ 2016 : Member of Regulation Judging Committee, National Security Agency
- 2017 ~ present : Member of Regulatory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발표 자료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 관리 법제 정비방안

2017. 11. 1.

나 채 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ents

- I 기후변화 등 재난 환경의 변화
 - 1. 재난환경의 변화
 - 2. 지진 등 변화된 재난에 대한 법제정비의 필요성
- II 시설물안전관리 법제 현황
 - 1.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 2.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현황
- III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 1.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
 - 2.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능력의 한계
 - 3. 안전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대행의 문제
 - 4. 미흡한 안전규제 및 인적책임의 한계
- IV 제도 개선방향
 - 1. 법적 제도개선 방향
 - 2. 안전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 기후 변화 등 재난 환경의 변화

》 1. 재난 환경의 변화

(1) 재난의 정의 및 분류

- 사전적 정의-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①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 ②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 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에의 마비와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제3조)
- 현재 재난의 개념은 확대되고 있음. 재난은 그 규모가 커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것을 의미하고 일상의 생활사고와 같은 분야는 재난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현재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안전과의 관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안전은 자연재난과 같은 위험원(危險源)으로 부터의 안전(safety)을 의미. 안전의 범위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난은 물론 일상생활사고로 부터의 안전까지 확대되고 있음.



》 1. 재난환경의 변화

(2) 재난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의 발생이 불규칙해지고, 그 형태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증가, 기반시설의 노후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는 등 재난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로 봄철의 가뭄, 여름철 태풍과 장마, 폭염은 점점 강력해지고, 한 겨울의 이상고온 및 폭설도 빈번해지고 있어, 재난에 대한 기존의 대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 지진 등 재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법제정비의 필요성

-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대응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도 점점 강력해지는 지진으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지진의 경우 1978년부터 관측. 연평균 27회가 발생하였으나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진도 3.0이상은 연평균 9회,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는 총 5회(1978년부터 2009년까지 총 858회의 자료기준 분석)가 발생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음.
-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여 그 진동이 서울까지 전달되어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관심이 증가함.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가 아니라는 견해와 지진 재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기존 시설물의 내진설계 등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6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Ⅱ.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현황

》 1.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1) 시설물의 개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해당.
- 시설물의 종류는 1종 시설물 7가지, 2종 시설물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1종시설물: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상하수도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이 포함됨)
- 현재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수행.



》 1.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

(2)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연혁

- 1970 - 1980년대
 - 197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조속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요구에 따라 대규모 시설물들이 건설됨.
 - 문제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춰 건설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관리인력의 부재, 기술적·제도적 낙후에 따른 노후화 진행 등으로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에 많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음.
- 1990년대
 - 1995년 5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제정됨.
 - 시설물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진단과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육성 등
 - 1995년 건교부 산하에 시설안전기술공단(현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국가주요시설물 안전확보, 시설안전 선진 기술개발 및 보급,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운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 건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9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1.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2)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연혁

- 1990년대
 -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등 교육훈련 실시
 - 1997년 2월 내무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소 개소.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전환(1998.2.28.)
 - 1995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영향평가제를 도입.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기관의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2000년대
 - 2004년 3월 '재난관리법'의 전면폐지와 동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공표
 - 2004년 6월 재난관리전문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을 개청. 미국 FEMA의 재난관리 프로세스별 조직 구조를 모방하여 기획관리관,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으로 구성하여 재난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기능체계로 편제하였음.
- 2010년대
 - 시특법 제16조, 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2, 제27조의2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관리·운영.

1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1.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2)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연혁

- 2010년대
 - 201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종료됨.
 - 2011-12년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 정비/세부지침 및 해설서 발간(교량, 터널, 건축물, 항만, 댐, 상수도, 하구둑, 수문, 제방, 하수처리장, 옹벽, 절토사면)
 - 2010년 시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11년 2,50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2012년에는 1,3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
 - 2011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환 및 국립방재연구원 확대, 개편
- 2015년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공표
- 2017년 국립재난연구원 내 지진대책연구실 신설
- 2017년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추진
-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정책추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부분 제고되었고, 사고발생을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1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1.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3) 지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예산 확대
 -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SOC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도로·철도 시설개량, 댐유지관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1조 6,353→1조 8,102억원)
 - 지진에 대비하여 도로·철도 교량 등에 대한 내진성능보강 예산을 대폭 확대(541→1,712억원)
 -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 및 자동차 안전, 도심 기반침하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264→2,435억원)
-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2016.12)
 - 지진 조기경보 전달체계 및 지진대피소를 정비(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 지진대피소 위치를 명확히 하여 옥외대피소 8,155개소, 실내구호소 2,489개소를 구분하여 지정. 네이버·다음 지도 및 T-map 등에 수록하여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내진보강을 강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7년 12월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예정.
 -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단층조사 새로이 착수.

1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1.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3) 지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 지진매뉴얼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내진공학, 지진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활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5개 대학교를 지진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약 체결.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
- 국민의 지진교육 및 홍보 대책을 포함하는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8~’22)」을 올해 12월말 까지 수립 예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등 지진 관련 법령도 전면 정비.
- 지진 안전 주간“ (2017.9.11.~15.) 행사로 주민대상 지진대피훈련 및 지진 홍보캠페인 행사 실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수정 가결)
- 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뤄진 시설물에 대해 정부가 지진안전 시설물을 인증.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
-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총 118곳에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
-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바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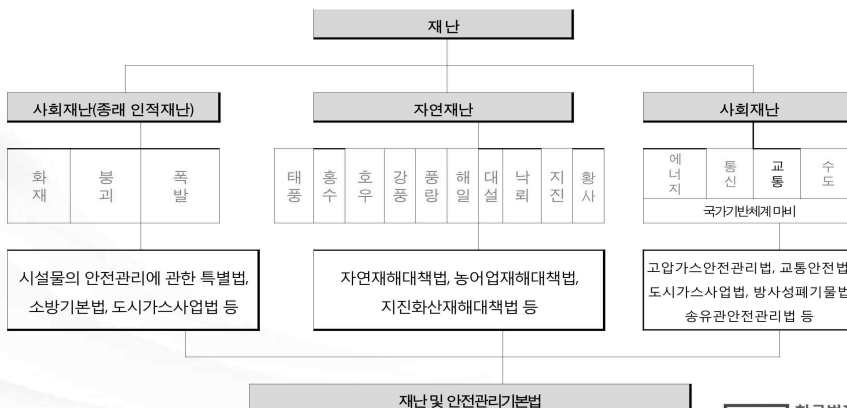
13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현황

(1) 시설물 안전관리 법령 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유형에 따라 시특법 등 다수의 개별 법이 존재함.
- 법령 명에 ‘안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법령은 191개, 자치법규는 2095건에 이르고, ‘재난’도 10여개의 법령과 1061건의 자치법규가 존재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다수의 개별 법이 존재함.



14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현황

(1) 시설물 안전관리 법령 체계

부처	법령명
교육부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궤도운송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안전법, 하천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운법, 항만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항질서법, 어촌·어항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안전기본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산업통상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광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경찰청)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전정비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재해위험개선사설 및 이주대책에 대한 특별법,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해양경비법, 119구조·구급에관한법,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하수도법, 환경보전법

15



2.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현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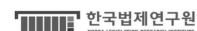
● 목적과 기능

- 국가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대응체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함.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확립
- 재난기본법은 2004년 법제정 이후 수 차례의 부분 개정을 해오다가 2013년 대폭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재난관리법으로 개편하고,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 재난안전관리 체계

- 재난대는 안전관리체계: 예방- 대비 - 대응- 복구 및 보상 단계
-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체계: 위원회형 재난관리체계-중앙안전관리위원회
대책본부 재난관리체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6





2.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현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 3 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 5 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영 등)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 계획의 작성·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제34조의9(재난대피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5조(재난대피훈련)
제 2 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 4 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예방 조치)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2조(정부합동안전점검)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17

2.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현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 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36조(재난사태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위기경보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운영 등)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5조(응급부담)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응급조치)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대)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현장지휘)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5조(재난대피능력보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등)	제 7 장 재난의 복구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58조(재난피해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제59조의2(재난복구사업의 관리) 제2절 특별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및보상) 제65조의2(포상)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 8 장 안전문화진흥 제66조의2(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제66조의4(안전관리현장)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66조의6(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 등)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제66조의8(안전지수 공표)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9장 보 칙 제66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69조(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중합 계획의 수립 등) 제72조(연구개발사업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 체계의 구축·운영)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제76조(재난 보험 등의 가입 등) 제76조의2(안전책임관)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의2(별치 적용시의 공무원의 제) 제10장 별 칙 제78조의3(별칙) 제79조(별칙) 제80조(별칙) 제81조(양발규정) 제82조(과태료)
---	---	---

18

》 2. 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현황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목적 과 기능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연혁

- 90년대 이후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시설물의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됨.
- '1995년 1월' 법 제정 후 '2017년 10월' 현재까지 총 10회의 법률 개정을 거쳤음.
-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사항을 신설('08.03.21' 개정) 함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2014. 01. 17. 시행).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하도록 개정(제15조 제2항).
-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근거 마련(2014. 07. 15. 시행, 법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

19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 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현황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연혁

- 내진성능평가 의무화(2014. 07. 17. 시행).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
- 정밀안전진단 착수시기 및 벌칙규정 신설(2016. 02. 12. 시행, 법 제7조 2항) 안전점검 실적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2017. 01. 법 전부개정.
 - ①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 ②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 제2종 시설물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로 구분(재난안전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3종시설물로 편입하고,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
 - ③ 도로, 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시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2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현황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7조의2 내진성능평가 등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제8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제8조의3 하도급 제한 등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9조의2 결격사유
제9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9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5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9조의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제9조의7 시정명령
제9조의8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10조의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통보
제11조의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제11조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2조 비용의 부담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제2절 안전조치 등
제14조 사용제한 등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 등
제15조의2 조치결과에 통보
제16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제16조의2 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제16조의3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7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제19조 - 제24조 삭제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25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제26조 정관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 재원
제29조 사업

제29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9조의3 손익금의 처리
제30조 지도·감독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 「민법」의 준용

제5장 보칙

제3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산의 확보
제33조의2 실태점검 등
제33조의3 사고원인조사 등
제33조의4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 등
제34조 비밀유지
제35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제36조 청문
제3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39조의2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2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현황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목적 과 기능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주요 내용

①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 일본의 경우,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근거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 30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음.
- 1988년 최초로 도입해서 여러 번의 개정을 해왔고, 2016년에는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건축물로 더욱 강화되었으나 지진의 빈발과 위험증대로 법적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규모 6.0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나 현실은 법적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임. 특히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건물이 많은 대도시 주택가의 경우 지진발생시 매우 위험하며 내진설계 기준이 현재와 다를 때 건설된 건물도 있어 88년 이전에 지어진 낮은 건물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음.

2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시설물의 안전관리 법제현황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제5조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제8조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결과 등의 통보 제9조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2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제9조의3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등 제10조의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 계획 수립 등 제11조 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4장 내진대책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제13조 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등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제5장 대응 제18조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 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6장 지진·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제22조 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 개발 제23조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7장 보칙 제24조 토지예의 출입 등 제25조 손실보상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	--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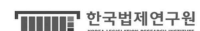
3.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는 현행 재난안전법에서 재난관리 4단계 과정(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체계에는 ①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체제와 ② 유형별 재난관리 체제가 있음.

(1) 범정부적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 범정부적 차원의 재난관리 체제는 의사결정 및 총괄, 협의·조정 및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전국적 범위의 체제로 구성되고, 이러한 체제는 크게 ① 위원회 체제와 ② 대책본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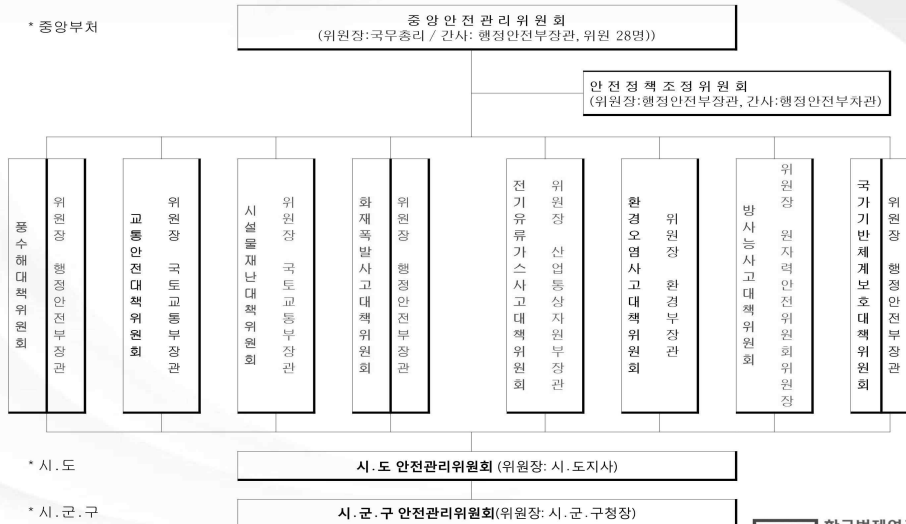




3.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체계

1) 위원회 체계

* 중앙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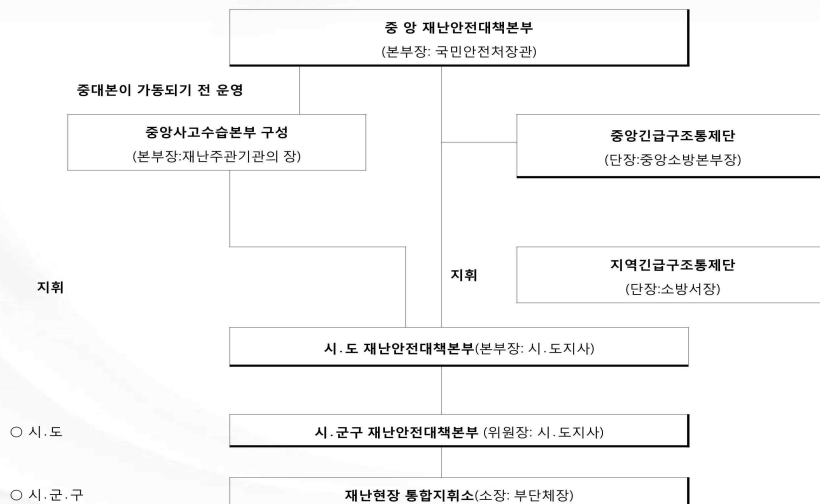


2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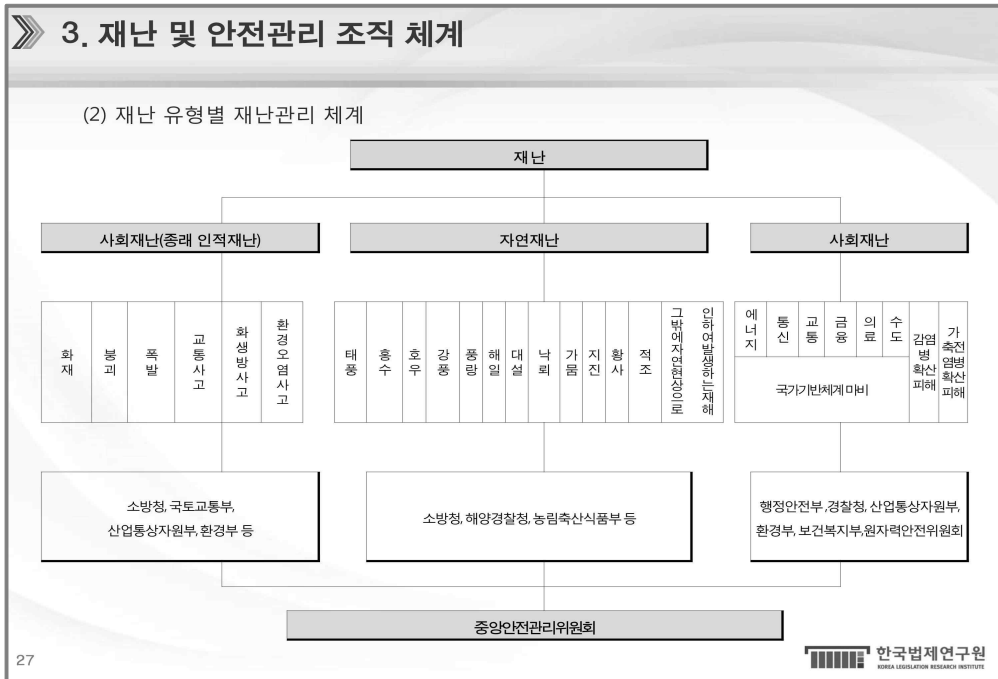
3.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체계

2) 대책본부 체계



26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Ⅲ.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 1.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한계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복합재난 등 미래형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

- 종래의 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화재 등 그 원인이 하나로 그 원인만 제거하면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였으나,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생활환경의 복잡화로 인하여 재난의 발생 원인과 그 결과를 매우 예측하기가 어려움.
- 하나의 재난이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그와 관련된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함. ex) 동일본 대지진으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대지진(1차)으로 쓰나미(2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원전폭발사고(3차)가 발생하여 초대형의 복합적인 재난으로 발전된 경우

● 법체계적인 문제

- 주로 태풍과 홍수 등 전형적 형태의 자연재난과 건물붕괴 등의 사회적 재난에 편중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
- 현재의 안전관리 법령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재난안전관련 정보와 시설물 안전기준 등 안전기준이 부처마다 산재해 있어서 상호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준도 상이하여 둘 이상의 재난 등이 합쳐진 복합적인 재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 지진 등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재난에 대응한 제도 및 정책의 미흡

29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1.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한계

-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3항의 제2호인 '내진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 2014년 12월 최초로 발표한 정부의 5개년 지진방재종합계획 중 '지진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8개 분야 중 내진설계 기준설정과 내진대책 추진에 있어 국민안전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문화재청(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제작)과 재난안전연구원(지질 및 지반조사 DB 통합관리) 등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 SOC와 건축물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매우 미미함.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대상 시설 관련 29개의 법이 나열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가장 광범위한 건축물 관련 『건축법』 외에 공항, 댐, 도로, 철도 등 11개 법이 국토교통부 소관 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정작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내진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내진설계 관련 SOC 대상을 규정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11개 법 중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만 건축물의 내진등급이 명시되어 있을 뿐, 댐, 공항, 철도 등의 10개 해당 법에는 내진 관련 내용이 없음.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한계

- 지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방방재청(공고 제2013-179호)이 지진발생위험에 따라 지진구역을 구분하고 있으나(공고 제2013-179호) 구역 구분은 제주도와 강원도 북부 일부만 II구역으로 구분할 뿐 나머지 90% 이상 지역을 I 구역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변별력이 없음. 따라서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내진설계 강화 대상 공공시설물(국토교통부 관리)에 대한 내진보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 그 외 다른 공공시설물인 철도 터널, 교량(376개소), 건물 등에 대한 조속한 내진성능 확보도 필요함.
- 공공시설물 중 공항의 경우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건축물이 57개로 이중 김포, 김해, 제주, 울산공항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물인 I 구역 대상의 관제송신소나 레이더송신소 등에 대한 내진 대비가 없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에 의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하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관 시설물인 공항, 댐, 교량, 철도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6년 5월 정부합동 지진방재종합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현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672개소에서 2018년까지 814개소로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대책을 확립하고 지진재해를 감소시킬 계획을 세우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제3항 제2호 나목에는 내진대책에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능력의 한계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매뉴얼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현장 대응훈련이 축적되어야 함.
- 법률적 측면의 문제점
 - 안전관련 법률이 다원화되고 분산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유사한 유형의 예방 및 대응과정이 분리 운영되고, 각종 안전관리계획이 중복 수립 및 집행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부서별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
 - 개별 법률간의 상호연계성도 부족하여 전체 법률체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안전관련 조례를 보면 많은 경우 기존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련 조례와 상호 중복적인 내용을 규정
- 안전관리 조직측면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조직은 재난유형별로 해당 부서 조직을 중심으로 분산된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어 유기적인 연계성이 미흡하고,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업무를 떠넘기는 현상 등이 발생
 - 전담조직(통상 안전총괄과)은 그 지방의 전체적인 안전관련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그 권한이 미약하여 종합적인 대책이나 총괄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상설 재난전담조직인 재난상황실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임.

3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능력의 한계

● 인력적 측면의 문제점

- 사전적인 재난 등 관리 전문인력의 부족. 시·군·구 재난관리 전담인력은 10-15명의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어 단순한 안전상황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이 미약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특히, 시설물에 대한 재난 예방적인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토목분야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예방위주의 안전관리행정을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부족함.

●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

-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 등에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예비비 위주로 복구비 예산을 편성하고, 복구비 산정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무의미한 복잡성과 여러 단계로 인하여 적기에 복구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재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발생

33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3. 안전관리업무의 민간 위탁·대행의 문제

- 민간위탁은 정부의 행정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
- 정부조직을 축소하여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사무를 관리하며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민간위탁과정의 전제가 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 부족

- 소방과 건설분야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협회 등 민간에 대한 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월호 참사의 경우 정부는 수난구조사무를 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독점권을 주어 사고대응 과정에서 능률성을 확보할 수 없었음.

● 지나친 비용절감의 경제적 논리와 책임성 부재

- 안전관리업무(소방안전점검, 선박안전점검, 해양구조업무의 핵심인 인명구조 같은 업무)를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적인 역할을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사적영역으로 넘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그 비용절감 효과도 명확하지 않음.
- 명확한 관리감독이 없는 안전관리사무의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위탁은 재난관리의 책임의 분산과 정책실패시 재량권 남용과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34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 안전관리업무의 민간위탁·대행의 문제

●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의 부족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가 주된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해양재난에 있어 인명구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위탁한 '연딘' 역시 인명구조 전문가가 아니라 선박인양 전문 기술보유 업체로 밝혀져 문제가 됨.
- 대응능력도 부족하여 국민의 기대와 행정목표 달성에 미흡하여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에도 의문임.

3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4. 미흡한 안전 규제 및 인적 책임의 한계

- 안전할 권리, 즉, 안전권은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므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인정됨.
-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법률 개정과 제도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
-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의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완화
- 안전에 대한 규제는 단순한 비용적 계산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력을 비교평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는 사례가 일반적 현상이었음.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선박의 수령연장이 대표적.
- 특히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강화를 하여야 하나, 다수의 안전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단속과 처벌의 약화는 안전을 등한시 하게 되어 많은 생명을 침해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를 발생시켜왔음.
- 안전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과 법집행의 엄격성 부족
- 시설물의 경우 정부의 안전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재량행위를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안전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도 법적용을 하지 않거나 법집행의 집행에 있어서 엄격성이 부족함. Ex) 어린이놀이시설물의 경우

36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4. 미흡한 안전 규제 및 인적 책임의 한계

- **안전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과 법집행의 엄격성 부족**
 -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규제철폐는 바람직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있어서는 안전수칙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실을 고려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흠결과 현실에 맞지 않은 안전규제**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이 낮거나 규제정도가 허술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미흡한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영업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나 금액 등을 현실화하고, 일정 기간안에 위반행위가 중복된 경우 자격을 취소 하는 등의 적극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감리,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안전수칙 등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의 부족**
 - 안전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육의 실질화를 위한 내용이 부족하고, 안전교육의 확인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IV. 제도 개선방향

》 1. 법적 제도개선 방향

-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령 자체에 대한 정비
 - 개별 안전 관련 법령의 충돌과 모순저축 방지 등에 대한 정비
- 시설물 관련 법률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단의 현실화 및 적정성 확보.
- 시설물 안전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감리강화와 부실건축물 건설한 시공사에 대한 명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처능력평가와 공개, 인력충원 등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함.

39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1. 법적 제도개선 방향

- 지진,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대한 법률정비
 - 기존의 태풍, 홍수 등 전형적인 자연재난에 대한 법적 정비와 함께 최근에 발생빈도가 증가한 지진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미세먼지 등 새로운 재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법률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사된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여야 함.
 - 지진 예측 등 대응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경주 지진을 통하여 지진 발생이 현실화되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대처과정에서의 일원화된 체계적 시스템이 요구되고, 지진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기상청의 '지진 조기 감지 및 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시 대응하는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4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 안전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함
- 재난대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전문화의 정착 및 확산

-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아직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나 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수칙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시설물 안전의 경우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의 체험학습 등을 통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진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대처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평소에 실제와 다른없는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4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 안전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 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운영을 위한 체험시설의 확충 등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 등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급에 재난시 행동요령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지진대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 시설과 현장 학습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진 등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방 공무원과 시군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함.
- 지역별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하여 지진대피 등 재난대응 주민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서, 소방 학교 등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인에 대한 정례적인 지진 등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4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감 사 합 니 다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Wang Fei

토론 1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농무 ·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 부국장
Deputy Division Director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Urban and Rural Development,
Resources and Environment Protection Affairs,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P.R.C

▶ 학력

- 산둥대학교(Shandong University) 법학박사

▶ Academic Background

- Doctor in Law, Shandong University

▶ 주요경력

-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 농무 ·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
- 도시 ·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법령 입안 및 검토 참여
- 지진 피해로부터 국민보호, 지진경감, 설문조사 및 지도제작 등 참여

▶ Work Experience

- Deputy Division Director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Urban and Rural Development, Resources and Environment Protection Affairs,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P.R.C
- Participation in drafting and reviewing laws and regulations on Urban and Rural Development
- Participation in Protecting Against and Mitigating Earthquake Disasters, Surveying and Mapping



자연재해 대응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중국의 법률 제정

Wang Fei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농무·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부
부국장)

1. 중국의 자연재해와 재해예방 및 경감

중국은 가장 많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세계 기후 변화와 함께 중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자원, 환경 및 생태계 측면에서 느끼는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자연재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태가 다양해지고, 영향을 받는 범위는 넓어지고 있으며, 발생 빈도 및 그로 인한 손실은 커졌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먼저 먼저 생각하는 중국 정부는 국민의 삶 및 재산의 안정을 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경감을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은 재해 예방 및 경감에 대한 법률제정뿐만 아니라 체계 및 메커니즘 구축을 더 강화하였으며, 재해 예방 역량을 확대하고, 공공기여를 장려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2 재해 경감과 관련된 법적 틀, 제도적 구조 및 운영 메커니즘 구축

중국은 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법률제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재해 경감 노력을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응급 대응 법, 중화인민공화국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관리 법, 포스트-원촨(Wenchuan) 지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규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법, 지진 예측 행정에 관한 규정, 지진 관찰 행정에 관한 규정, 지진 안전 평가 행정에 관한 규정, 격진 응급 대응에 관한 규정, 포스트-원촨(Wenchuan) 지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규정 등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을 공포해왔습니다. 이 법률 및 행정 규정 덕분에 중국 정부는 지진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법 제도의 주요 내용

(1)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청사진을 통한 건축 요건 명시

법률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청사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진 상황,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의 전체 목적,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 건축 배치도, 지진재해 예방 조치, 지진 응급 구조 조치,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대한 기술, 정보, 기금, 자재의 보호 조치.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관한 청사진은 지진을 감시하고 예방하며, 지진 상황 추적을 위해 주요 지역에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도와 지진재해 예방 조치, 지진 응급 준비, 지진재해 예방 및 경감에 대한 지식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지진 관찰 및 예측 강화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진 관찰 및 예측을 강화하며, 단일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유전 및 핵발전소 등과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시행자는 특별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 또는 강진 관찰 시설물을 국무원의 관련 행정 규정 조항에 따라 시공해야 합니다. 지진 관찰소 및 네트워크 건설은 하자 없는 시공을 위해 중국 정부의 법률, 규정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지진 관찰 시설물 및 지진 관측 환경 보호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진 관찰 시설물 및 지진 관측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지진 관찰 시설물을 침해, 손상, 또는 불법적으로 해체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지진 관측 환경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없습니다. 건물 시공, 확장 또는 개축 시, 지진 관찰 시설물 및 지진 관측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건설 프로젝트의 내진 요건 강화

법률에 따라, 신축, 확장 또는 개축 건물은 내진 강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 및 심각한 2차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무원의 관련 행정 규정 조항에 따라 지진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진강화 작업은 승인 받은 지진 안전 평가 보고서에서 정한 내진 강화 요건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및 병원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행은 다른 현장의 건물보다 훨씬 더 엄격한 내진 강화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내진 강화 역량을 증진해야 합니다.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의무 표준은 내진 강화 요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 단위 이상의 지방 정부는 농촌 주택 및 농촌 공공 시설물의 내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5) 보다 완벽한 도시 및 농촌 청사진

법률에 따라, 도시 및 농촌의 계획안에는 지진 응급 피난의 필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응급 대피로 및 응급 대피소를 결정해야 하며, 지진 응급 대피소에 필요한 이송, 급수, 전력 공급, 하수 처리와 같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지진 응급 구조

법률에 따라, 지진재해가 발생한 후, 지진 구호 당국은 즉각적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정비하여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진 응급 구조 인력을 파견하며, 수송, 철도, 수질 보호, 전력, 통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인프라를 긴급하게 복구하고, 응급 대피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임시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7) 지진발생 후 주민의 일시 이주

법률에 따라, 운송 조건이 편리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산 및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곳에 일시적인 주민 이주지가 마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지진 활동 단층 및 심각한 부차적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주민 이주 지역은 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재해 및 역병 예방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진 곳이어야 하며, 필요한 지원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물이 건설 되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8) 지진발생 후 복구 및 재건축

법률에 따라, 지진발생 후 복구 및 재건축을 계획할 때는, 지질학적 조건, 지진 활동 단층 분포, 자원 적재량 및 환경에 따라, 도시 및 마을의 배치,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물의 건축, 재해 예방 및 경감, 생태 환경, 천연 자원 및 역사, 문화 유산 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아닌 곳이나 지진발생 후 재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된 도시 및 마을 예정지는 지진발생 후 재건 및 재건축에 관한 계획 요건, 내진 강화, 재해 예방 및 경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진 활성 단층,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지역, 홍수, 산사태, 붕괴, 토석류, 지반 침하, 기타 재해 및 전염병의 자연 병변 등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It includes major landmasses like China, India, and Southeast Asian archipelagos.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배 정 주

토론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외사업팀장

Bea Jung Ju

Team leader/Overseas Projects Team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KISTEC)

▶ 학력

- 1988 중앙대학교 토목과 학사
- 1993 미국 오레곤 주립대 토목과 석사
- 2008 충북대 토목과 박사

▶ Academic Background

- 1988 Bachelor degree in Civil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 1993 Master degree in Civil engineering, Oregon State University
- 2008 Doctor degree in Civil engineering, Chungbuk University

▶ 주요경력

-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단 팀원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팀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수리시설실 팀장
-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외사업팀 팀장
-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사업책임자

▶ Work experience

- Team staff, Hydraulic structure bureau,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 Team staff, Overseas project bureau,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 Team leader, Hydraulic structure bureau, KISTEC
- Team leader, Overseas project team, KISTEC
- Project manager, Capacity development for safety management of the public facilitie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시설물 안전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배정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외사업팀장)

먼저 아세안과 한국의 시설물안전관리 관련 법체계의 현황과 정비 방안에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발제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발제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이에 기여한 시설물안전관리 법제의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한국의 경험은 ASEAN 회원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물안전관리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하여 제 생각과 고민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물안전관리 법제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조혜신 한동대 교수님의 발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수 불가결하게 연관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는 경제개발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들의 건전한 상태유지를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확충된 시설에 대한 건전한 관리가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법제의 정비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세안에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한국의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를 참조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는 국가 중요시설물에 대해 중앙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며 한국에서

시설물안전관리 법제가 정비된 후 지난 20여년간 단 한건의 안전관련 사고가 없었으며 이러한 점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아세안국가에서 한국의 시설물안전관리 법제를 참조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시설물안전관리 법제정비를 통해 얻는 것에 대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아세안의 시설물관리자가 시설물안전관리는 경제적으로 비용만을 발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쉬우나 실제로는 시설물안전관리를 통해 여러 성과가 얻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성과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건전하게 관리된 시설물에 의한 경제발전의 지속적인 지원이며 붕괴사고의 방지를 통해 아세안 각국의 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과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시설물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소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관리 법제정비를 통해 안전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술자를 육성하는 한편 시설물안전관리를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분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발표자료에 인도네시아 시설물안전법 제정안을 제시하셨는데 법 내에서 많은 상세는 법 아래의 장관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들 장관령 제정안도 연구사업내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설물안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는데 인니내의 댐, 교량 등 여타 기존 개별시설물안전위원회와의 구체적인 위계 및 업무분장에 대해 시설물안전법 제정안내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faint, light gray map of the Asian contin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spanning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It includes major landmasses like China, India, and Southeast Asia.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하 동 호

토론 3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Ha Dong Ho

Professor of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 학력

- 199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사
- 199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
- 1996 일본 동경대학 토목공학전공 공학박사

▶ Academic Background

- 1990 Bachelor's degree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1992 Master's degree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1996 Ph.D. Degree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of Tokyo, Tokyo, Japan

▶ 주요경력

- 1996 ~ 1999 일본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철구사업부 교량기술부 연구기술자
- 1999 ~ 2000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초빙조교수, BK21 계약조교수
- 2000 ~ 2003 유니슨기술연구소 부소장
- 2003 ~ 현재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 Work Experience

- 1996 ~ 1999 Research Engineer of Department of Bridge Engineering, Steel Structure Division,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Tokyo, Japan
- 1999 ~ 2000 BK21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2000 ~ 2003 CTO of Structural Engineering Division,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of UNISON Co., Ltd, Seoul, Korea
- 2003 ~ prese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우리나라의 내진대책 현황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교수)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의견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지진공학회 소속으로서 우리나라의 내진대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학적으로 중약진지역에 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진의 특성은 재현 주기가 불규칙하고 최대지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역사지진은 약2000년간 기록이 남아 있지만 최근 100여년간 별다른 지진피해가 없어 한반도는 지진이 없는 지역이니 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세기말까지 이어져와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10수년에 불과합니다.

원자력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내진관련 연구와 대책은 한국지진공학회의 설립 (1996)과 “내진설계기준연구Ⅱ(1997)”가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금년까지 각종 내진관련 기준의 상위기준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이 제·개정된 이외에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07.), 내진설계기준 (공통기준) 등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부터 SOC 시설물 내진기준 및 제도 개선 연구, 국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마스터플랜 수립, 지진재해대응체계 개선 등의 새로운 과업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재해대책법(2008)으로 지진재해 대책의 주도권이 당시의 건설교통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갔지만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과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관련 연구는 그 역사가 일천하고, 100여년간 피해를 가져온 지진은 쌍계사지진(1936), 홍성지진(1978), 오대산지진(2007), 경주지진(2016) 정도입니다. 그 피해도 타 자연재해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연구와

대책의 기간을 생각할 때, 그 성과는 대단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채준 연구위원님이 지적한 지진구역의 변별력 부족은 내진설계를 위한 단순화 작업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일본은 전국토를 3개, 미국은 6개의 지진구역으로 구분하여 내진설계를 실시합니다. 각각 남한의 4배, 100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 지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진위험지도는 상당히 자세한 형태로 준비되어 있으며, 한반도 활성단층도 제작 업무가 5년+20년의 장기 계획으로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이 연구의 성과는 더욱 신뢰도 높은 지진위험지도를 마련하는데 이용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진 조기감지 및 경보시스템”은 국토면적이 넓고 해양지진처럼 진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효용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와 중약진지진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투자대비 효용성이 낮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진재해대책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하자면 지진관측과 자료 관리가 있습니다. 설치기준, 계측기의 성능기준, 계측데이터의 관리 등에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예산낭비로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 내진보강 등과 관련된 업무도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관련 학문을 충분히 습득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이 70~80% 수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20~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야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해지는데, 이 문제의 해결법은 정치적인 방법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구조물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은 확보되고 있으나 기존의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5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발 행 처	법제처
발 행 일	2017년 11월
디자인·인쇄	쵸이스디자인
관 련 문 의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팀 (044-200-6829)